

2007년 연구용역보고서

아시아 경쟁절차법 비교연구

-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

2007. 12.

OECD 서울센터 경쟁본부

연구수행자 : (사) 기술과 법 연구소

소장 : 손경한

교수 : 홍명수, 조성국

책임연구원 : 박진아, 허해관

연구기획팀장 : 윤병옥

아시아 경쟁 절차법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Asia

-목 차-

제1부

아시아 경쟁 절차법 비교연구

I. 서론

II. 일본의 경쟁절차법

III. 싱가포르의 경쟁절차법

IV. 대만의 경쟁절차법

V. 인도네시아의 경쟁절차법

VI. 한국의 경쟁절차법

VII. 결론

제2부

A Comparative Study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Asia

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Japan

I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Singapore

II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aiwan

IV.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Indonesia

V.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Korea

VI. Conclusions

제1부

아시아 경쟁 절차법 비교연구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3년 WTO협정 조인시 미국을 비롯한 서명국은 분원 경쟁라운드 (Competition Round)의 개시에 합의하였으나 14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21세기 경제의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과 불공정 행위의 증가로 경쟁법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경쟁법의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일하여 경쟁법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는 아세아 제국 중 경쟁법제를 갖추고 있는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5개국의 경쟁절차법체계나 운영상황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경쟁절차법의 조화와 나아가 통일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 및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아시아의 주요국가 중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경쟁절차법제를 분석·비교하여 그 조화 방안을 모색하는 범위로 국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내용

일본은 일찍이 시장경쟁체제를 받아들여 이미 상당한 수준의 경쟁절차법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경제질서의 운영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하여는 이러한 차이에 기초하여 이들 국가의 경쟁절차법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1980년 제정한 이래로, 그동안 상당한 수준의 경쟁법리가 형성되고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경쟁당국의 조직과 권한, 경쟁당국의 심사·처분 절차, 경쟁당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경쟁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 절차를 각각 대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일본의 경쟁절차법

-목차-

1. 서론
2. 公正取引委員會의 조직과 권한
 - 가. 公正取引委員會의 조직
 - 나. 公正取引委員會의 권한
3. 公正取引委員會의 심사처분절차
 - 가. 심사절차의 개시
 - (1) 심사절차 개시의 유형
 - (2) 신고에 의한 심사개시
 - (3) 과징금 감면제도에 의한 심사 개시
 - 나. 심사절차의 진행
 - (1) 심사절차의 종류
 - (2) 행정조사
 - (가) 행정조사의 의의
 - (나) 행정조사의 방식
 - (다) 행정조사의 결과
 - (3) 범칙조사
 - (가) 범칙조사의 대상
 - (나) 범칙조사의 권한
 - (다) 범칙조사의 결과
 - 다. 심사절차의 종료와 명령의 사전절차
 - (1) 심사절차의 종료
 - (2) 명령부과의 사전절차

4. 公正取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 公正取引委員會에서의 심판절차의 진행

- (1) 심판절차의 개시
- (2) 심판절차의 적정성

나. 심결의 성립

- (1) 심결의 내용
- (2) 심결에의 불복

다. 동의심결제도

- (1) 동의심결의 법적 근거
- (2) 동의심결의 의의
- (3) 동의심결에 대한 제도적 평가

라. 긴급정지명령제도

마. 심결취소소송

5.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처벌절차

나. 민사집행절차

- (1) 금지명령청구소송
- (2) 손해배상청구소송

6. 집행절차 운영의 현황 및 결론

가. 公正取引委員會의 사건처리절차 현황

나. 公正取引委員會 사건처리절차의 실효성 분석

다. 사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라. 결론

II. 일본의 경쟁절차법

1. 서론

일본의 경쟁법 중 가장 중요한 입법은 1947년에 제정되어 수차 개정되어 온 「私的獨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關する法律」(이하 獨占禁止法)이다. 동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제주의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규제기관인 公正取引委員會는 범위반사실이 있을 경우에 일정한 명령 또는 심결을 부과하는 절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피심인이 이에 불복할 경우에 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獨占禁止法 위반 사건에 대한 사적인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책적으로 사적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는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적분쟁해결로서 금지청구권(差止請求權)이나 무과실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독점금지법 집행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公正取引委員會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적 사건처리절차는 獨占禁止法 집행에 있어서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특히 2005년 獨占禁止法 개정에 의하여 나타난 사건처리절차의 근본적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다. 동 개정에 의하여 우선 형벌의 부과를 위한 고발과 관련하여 범칙절차에 관한 특별한 절차가 마련되었다. 특히 동 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와 달리 법원에 의한 허가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사권한의 강화는 獨占禁止法 집행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사건처리절차, 특히 심판절차에도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개정 전의 심판절차가 公正取引委員會의 심결을 정점으로 하여 진행되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는 절차였다면, 개정 이후의 절차는 위법상태의 배제조치 명령이 심사관에 의하여 부과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구조적 변화의 의의와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규정된 獨占禁止法 사건처리절차의 특성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公正取引委員會의 조직과 권한

가. 公正取引委員會의 조직

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서 위원장 및 위원 4명으로 조직되며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5년이며 재임중 신분과 보수가 보장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통상의 행정기관과는 달리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위원회 사무총국 아래 경제거래국과 심사국이 있으며 경제거래국 산하에 거래부, 심사국 산하에 특별심사부가 있고 각 지방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심판사건을 담당하기 위하여 5명의 심판관이 있다.

나. 公正取引委員會의 권한

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그 성격상 준사법적 권한, 준입법적 권한 및 기타의 권한을 가진다.

(1) 준사법적권한

公正取引委員會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배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준입법적권한

公正取引委員會는 독립적 직권행사를 위하여 내부규율과 그 사무 처리절차들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방법의 지정을 위한 고시 등을 제정할 수 있다.

(3) 기타의 권한

그 외 公正取引委員會는 합병·영업양도시의 신고수리, 주식보유보고 수리, 적용제외의 인가승인 등 관리업무와 사업활동 및 경제실태의 조사업무, 법령조정 및 행정조정 업무, 국제협력 업무 등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3. 公正取引委員會의 심사처분절차

가. 심사절차의 개시

(1) 심사절차 개시의 유형

獨占禁止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심사라고 하며,

그 진행과정이 심사절차에 해당한다. 특히 심사는 公正取引委員會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처리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심사, 심판, 심결로 이루어지는 사건처리절차 구조의 첫 단계를 의미한다.¹⁾

심사절차의 개시는 다음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하여 얻게 된 단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첫 번째는 獨占禁止法 위반 사실에 관한 신고에 경우인데, 신고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법 45조 1항). 2) 또한 심사절차는 직권 탐지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고(법 45조 4항), 3) 2005년 동법 개정에 의하여 도입된 '과징금 감면제도'에 의하여 획득한 정보에 의해서도 심사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법 7조의2 7항 내지 9항). 4) 끝으로 「中小企業廳設置法」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의 요구에 따라서 심사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

(2) 신고에 의한 심사개시

일반인의 신고에 관한 근거는 獨占禁止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률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에 대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2항).

한편 이러한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신고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그 취지를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3항).

이상의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인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누구든지 동법에 위반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公正取引委員會는 홈페이지를²⁾ 통한 권장사항에서 신고인의 비밀 보호를 전제로 가급적 익명에 의한 신고를 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에 관한 업무는 公正取引委員會의 심사국 정보 관리실에서 담당한다.

1) 谷原修身, 獨占禁止法の解説, 一橋出版, 2006, 72-73면.

2) <http://www.jftc.go.jp/dk/sinsa.html>

한편 신고의 방식에도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서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구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한 요건에 따른 서면의 신고에 대해서는, 公正取引委員會가 신고인에게 사건처리에 대한 취지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公正取引委員會의 실무는 서면에 의한 신고를 권장하고 있으며, 신고서면 작성 요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신고서 기재사항은, 1) 신고자의 이름·주소, 2) 범위반의 혐의가 있는 행위자의 명칭·대표자명·소재지 또는 이름·주소 그리고 3)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구체적 사실 등이다.

특히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 사실에 대한 기재는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데, 公正取引委員會는 ①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주체와 직접적인 관계자의 성명,³⁾ ② 공동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의 특징, ③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일시, ④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장소, ⑤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이유, ⑥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에 의한 피해자 또는 상대방, ⑦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방법, ⑧ 범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무엇을 하였는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⁴⁾

(3) 과징금 감면제도에 의한 심사 개시

獨占禁止法 제7조의2 제7항에 의하여 단독으로 당해 위반행위자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의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고(1호),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2호) 과징금의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동법 제8항에 의하여 단독으로 위반행위자 중 두 번째로 당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고(1호)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개시일 이후에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3호)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징금 액수의 100분의 50을 감액하며, 단독으로 위반행위자 중 세 번째로 당해 위반행위의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고(2호)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개시일 이후 당해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자(3호)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징금 액수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3) 예를 들어 가격담합의 회합에 참석한 자의 성명 등을 말한다.

4) <http://www.jftc.go.jp/dk/sinsa.html>

이와 같은 과징금 감면제도에 따른 신고도 심사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다. 이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에 대한 신고에 관한 업무는 과징금 감면 관리관이 담당한다. 이때의 신고는 대체로 2회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업자는 과징금 감면을 신청하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신고서에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 그리고 위반행위의 태양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의 신고서에는 사업자의 명칭을 밝혀야 하며, 또한 同着을 배제하기 위하여 Fax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술한 동법 제7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 감면제도가 적용되는 순서는 신고서의 제출 순서에 의한다. 이와 같은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는 제출 순위 및 추가적으로 제출한 신고서와 자료의 제출기한을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에 따라서 당해 사업자는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상세, 위반행위의 태양의 상세, 개시시기 및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종료시기, 공동으로 위반행위를 행한 다른 사업자의 명칭과 직원의 이름을 기재한 2차 신고서를 제출한다. 2차 신고서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지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Fax나 우편에 의한 방식도 가능하다. 한편 公正取引委員會가 구두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한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부의 신고 사항에 대하여 구두에 의한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심사절차의 진행

(1) 심사절차의 종류

獨占禁止法 위반행위의 단서를 획득한 후에, 公正取引委員會의 심사는 두 개의 다른 범주에서 진행된다. 전술한 것처럼, 公正取引委員會의 범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는 위반행위에 대한 배제 조치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최종적인 조치로 하는 행정조사와 公正取引委員會의 형사고발을 목표로 진행되는 범칙조사로 나뉘며, 양자는 완전히 구별되는 상이한 조사절차로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범칙조사는 증거 조사능력의 강화를 기하고, 심사절차의 적정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⁵⁾

(2) 행정조사

(가) 행정조사의 의의

5) 瀬領眞悟, “2005年法改正後の獨禁法の状況と課題”, 2007 東亞細亞 競争法 國際學術大會, 2007, 30-31면.

행정조사는 獨占禁止法에 위반하는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조사로서, 기본적으로 조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한 임의조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나) 행정조사의 방식

행정조사는 영업소 등에 입회검사를 실시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관계자에게 출두를 명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公正取引委員會가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처분의 내용은 獨占禁止法 제47조 제1항에 법정되어 있는데,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심문하거나 이들로부터 의견 또는 보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1호), 감정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감정하게 하는 것(2호),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제출된 물건을 압류하는 것(3호), 사건관계인의 영업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입회하여 영업 및 재산의 상황,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4호) 등이 처분의 내용에 해당한다.

한편 행정 조사를 함에 있어서, 公正取引委員會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公正取引委員會의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법 47조 2항). 이때 심사관은 특히 입회검사를 함에 있어서 公正取引委員會 직원의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법 47조 3항).

(다) 행정조사의 결과

행정조사의 결과, 獨占禁止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이른바 '배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의 경우에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입법 태도는, 과거 배제 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납부명령을 심판절차 이후에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2005년의 동법 개정으로 이상의 명령의 시기가 선행하게 되었다. 즉 과거의 명령이 심판 절차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현행 獨占禁止法상 이상의 명령은 심판절차 이전에

발하여지는 것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후술하는 公正取引委員會의 심판절차는 사전적인 것에서 사후적인 절차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경은 公正取引委員會의 사건처리절차가 전체적으로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후술하는 심판절차의 司法節次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3) 범칙조사

(가) 범칙조사의 대상

범칙 조사는 公正取引委員會가 형사 고발에 상당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범칙 사건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조사 유형을 의미한다. 형사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獨占禁止法 제89조 내지 제91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동법 제89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3조에 위반하여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을 한 자(1호)와 동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2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도 처벌한다.

또한 동법 제9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6조의 특정한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의 금지 규정 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단체의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 협정 또는 국제적 계약을 한 것(1호), 동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업자 수의 제한의 금지 규정 또는 구성사업자의 기능이나 활동 제한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2호), 배제 조치명령 또는 동법 제65조의 독점적 상태에 관한 동의심결 내지 동법 제67조 제1항의 독점적 상태에 관한 심판심결이 확정된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3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1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서, 동법 제10조 제1항 전단의 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

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1호), 동법 제11조 제1항의 은행 또는 보험 회사의 의결권 보유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동조 제2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2호), 동법 제13조 제1항의 임원겸임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임원의 지위를 겸한 자(3호), 동법 제14조 전단의 회사 이외의 자의 주식보유의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4호), 이상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동법 제17조의 탈법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자(5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96조 제1항은 公正取引委員會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고발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법 96조 2항), 公正取引委員會는 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에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법 제95조의4 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해산의 선고 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특허·실시권의 취소의 선고를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전항의 문서에 기재할 수 있다(법 96조 3항). 한편 이때의 고발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법 96조 4항).

이와 같이 범칙조사는 이와 같은 고발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조사이며, 소추조건으로서의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법 제89조 내지 제91조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獨占禁止法 위반 행위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가격 카르텔, 수량 제한 카르텔, 시장 분할 협정, 입찰 담합, 공동 보이콧, 그 외의 국민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죄질이 중하고 중대한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사업자나 산업, 또는 배제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업자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중에서, 公正取引委員會가 행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獨占禁止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도 소추조건으로서의 고발과 이에 따른 범칙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公正取引委員會도 향후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실

시할 방침을 피력하고 있으며,⁶⁾ 따라서 범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나) 범칙조사의 권한

범칙조사를 위하여 公正取引委員會의 지정을 받은 직원은 범칙조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죄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두를 구하거나, 범죄혐의자 등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범죄혐의자 등이 소지하거나 거치한 물건을 검사하거나, 범죄혐의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거나 거치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법 101조 1항). 또한 위의 직원은 범죄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관공서 또는 공사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구할 수 있다(법 101조 2항).

한편 범칙조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강제조사와 관련하여 獨占禁止法은 영장주의적 관점에서 법원에 의한 허가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동법 제102조 제1항은 범칙조사를 수행하는 직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에는, 公正取引委員會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전에 발부하는 허가장에 따라서 臨檢, 수색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 직원은 임검 장소, 수색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류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사전에 발부한 허가장에 따라서 이때의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법 102조 2항).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위의 두 경우에 허가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법 102조 3항).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재판소 또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임검 장소, 수색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압류되는 물건과 아울러 청구자의 관직 및 성명, 유효기간,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할 수 없고 허가장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 교부의 연월일과 함께 재판소명을 기재하고, 자신의 기명날인을 한 허가장을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에 범죄혐의자의 성명 또는 범죄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102조 4항). 한편 허가장을 교부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다른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고, 임검, 수색, 압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법 102조 5항). 이상의 임검, 수색 또는 압류를 함에 있어서 시기상의 제한, 즉 야간집

6) <http://www.jftc.go.jp/dk/hansoku.html>

행에 대한 제한이 따른다. 즉 독점금지법 제104조 제1항은 臨檢, 수색 또는 압류를 함에 있어서 허가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일몰부터 일출때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몰전에 개시된 임검, 수색 또는 압류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몰 후까지 계속될 수 있다.

獨占禁止法 제103조 제1항은 법원에 의한 허가를 전제로 우편물 등의 압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허가장의 교부를 받고, 범칙혐의자가 발송하거나 발송받은 우편물, 서신이나 전신에 의한 서류로서 시행령상의 규정에 기초한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우편물, 서신이나 전신에 의한 서류로서 시행령상의 규정에 기초한 통신사무를 취급하는 자가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장의 교부를 받고, 이를 압류할 수 있다(법 103조 2항).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상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발신인 또는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에 의하여 범칙사건의 조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103조 3항).

한편 임검, 수색 또는 압류의 허가장은 이에 관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법 105조).

(다) 범칙조사의 결과

公正取引委員會는 범칙조사에 의하여 犯則의 심증을 얻게 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법 74조 1항). 한편 동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도 동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법 74조 2항). 이상의 규정형식이 보여 주듯이, 獨占禁止法은 범칙의 심증을 얻은 경우 또는 동법 규정에 위반하는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의 고발을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의 실제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동 규정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⁷⁾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公正取引委員會의 고발은

7) 神山敏雄, 獨禁法犯罪の研究, 成文堂, 2002, 34면.

재량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상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에,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法務大臣을 경유하여 그 취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內閣總理大臣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법 74조 3항).

다. 심사절차의 종료와 명령의 사전절차

(1) 심사절차의 종료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는 심사를 통하여 동법 위반행위 여부에 관하여 얻게 된 판단에 따라서 일정한 명령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 명령부과의 사전절차

특히 행정조사의 종료 후 범위반행위에 대한 배제 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명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정 절차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명령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 의견진술이나 증거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獨占禁止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公正取引委員會가 배제 조치명령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당해 배제 조치명령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견 진술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부여된 때에는,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배제 조치명령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따라서 통지되어야 하며(법 49조 5항), 이때 기재될 사항은 예정된 배제 조치명령의 내용(1호), 公正取引委員會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2호), 公正取引委員會에 대하여 이상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취지 및 기한(3호) 등이다.

또한 이상의 규정은 獨占禁止法 제50조 제6항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 준용된다. 다만 동법 제49조 제5항 제1호의 예정된 배제 조치명령의 내용은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과징금의 액' 그리고 公正取引委員會가 인정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법령의 적용은 '과징금 계산의 기초 및 과징금에 관련된 위반행위'로 이해된다.

4. 公正取引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불복

가. 公正取引委員會에서의 심판절차의 진행

(1) 심판절차의 개시⁸⁾

배제 조치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즉 獨占禁止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배제 조치명령에 불복이 있는 자는, 公正取引委員會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제 조치명령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公正取引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배제 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동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제 조치명령은 확정된다(법 49조 7항).

또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 납부명령은 확정된다(법 50조 4항 및 5항).

배제 조치명령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당해 명령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그러나 公正取引委員會는 배제 조치명령에 관한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배제 조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법 54조 1항).

이와 같은 집행 정지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집행정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경쟁의 확보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正取引委員會는 당해 집행정지를 취소한다(법 54조 2항).

8) 현재 배제조치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비율은 약 1.1%,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비율은 약 3.5%로서 심판청구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瀬領眞悟, 전게서, 29면 참조.

이상의 배제 조치명령에 있어서 집행부정지 원칙은 과징금 납부명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심판 절차가 개시되어도 과징금 납부명령은 실효하지 않으며, 과징금의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결로서 해당 과징금 납부 명령이 유지되었을 때에는, 과징금 부과액에 연체금이 추가된다(법 70조의9 2항).

(2) 심판절차의 적정성

심판은 公正取引委員會 또는 심판 절차를 실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公正取引委員會에 의하여 지정된 직원이 주재한다. 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公正取引委員會의 명령에 불복하는 피심인이 범위반 사실의 존부를 다투고, 심사관은 범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판에 상응하는 절차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심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獨占禁止法은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법 61조), 이로써 공중에 의하여한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심판절차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법 68조) 증거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한편 피심인은 범위반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이외에 참고인의 심문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방어권이 인정되고 있다(법 59조). 반면에 심사관은 심판에 있어서 피심인에 불이익이 되는 주장 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법 58조 2항 단서).

심판에 관한 사무는, 公正取引委員會의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즉 獨占禁止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公正取引委員會의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하지만, 동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서 公正取引委員會에 의하여 지정된 심판관이 행하는 사무는 사무총장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결국 심판관이 심판에 관한 사무를 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즉 심판관은 심판 절차와 관련된 사무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公正取引委員會の審判に關す

る規則」 제13조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판관의 직무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여하였던 자는, 심판관으로서 당해 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법 56조 1항 단서).

나. 심결의 성립

(1) 심결의 내용

심판청구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거나 기타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는 심결로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법 66조 1항).

심판청구가 이유가 부인되는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는 심판절차를 마친 후에 심결로서 당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법 66조 2항).

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公正取引委員會는 심판절차를 마친 후에 심결로서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를 변경한다(법 66조 3항).

한편 동법 제66조 제4항은 위법선언 심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公正取引委員會는 동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원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원처분시까지 제3조의 사적독점 또는 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제6조의 특정한 국제적 협정 또는 계약의 금지, 제8조 제1항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업지배력의 과도집중회사의 설립 등의 제한, 제10조 제1항의 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제11조 제1항의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의 제한, 제13조의 임원겸임의 제한, 제14조의 회사 이외의 자의 주식보유의 제한, 제15조 제1항의 합병의 제한, 제15조 제2항의 분할의 제한, 제16조 제1항의 영업양수 등의 제한, 제17조의 탈법행위의 금지 또는 제19조의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고, 한편 당해 원처분시에 있어서 이미 당해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심결로서 그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심결의 불복

公正取引委員會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獨占禁止法 제8조의4 제1항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를 명하는 심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이다(법 77조 1항). 이와 같은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동경고등재판소의 관할로 한다.

이때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며(법 77조 2항),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제소는 할 수 없다(법 77조 3항).

다. 동의심결제도

(1) 동의심결의 법적 근거

심결의 한 유형으로서 동의심결이 있다. 동의심결은 피심인이 스스로 동의심결을 신청하는 것에 의한다.

동의심결의 법적 근거는 獨占禁止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公正取引委員會는 제8조의4 제1항의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제53조 제1항의 독점적 상태에 관한 심판절차의 개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개시결정을 한 후에,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에 기재된 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면서, 公正取引委員會에 대하여 그 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결을 받겠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동시에 독점적 상태에 관한 상품 또는 용역에 있어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하여 스스로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계획서에 기재된 구체적 조치와 같은 취지의 심결을 할 수 있다.”

(2) 동의심결의 의의

동의심결은 정식의 심판절차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절차의 간이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동 제도는 범위반 행위와 위법배제조치에 대한 피심인의 승낙이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분쟁해결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심판심결을 정식의 심결이라 한다면, 동의심결은 약식의 심결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판심결의 경우에 심결서에 위반사실이 상당히 상세하게 인정되어 있고, 인정의 근거로서 피심인과 심사관의 주장, 증거, 증거에 대한 평가 등이 자세히 기재되는데 반하여, 동의심결의 심결서는 이러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즉 심판심결과 동의심결은 인정사실의 정밀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⁹⁾ 이로부터 심판심결과 동의심결의 구속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¹⁰⁾

한편 동의심결 제도의 도입시 동의심결은 獨占禁止法상의 범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행법상 동의심결은 전술한 것처럼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에 제한됨으로써, 제도적 의의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3) 동의심결의 제도적 평가

전술한 것처럼, 피심인이 심판개시결정서에 기재된 사실 및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후의 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결을 받는 취지를 문서로서 신청하고, 또한 당해 위반행위를 배제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배제를 보장하거나 또는 독점적 상태와 관련되는 상품 혹은 역무에 대하여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취하여야 할 구체적 조치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동의심결은, 사건처리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간이절차제도의 하나로서 도입되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성격상 동의심결제도는 시정권고 내지 권고심결제도와 상당 부분 제도적 취지와 기능을 공유한다. 그러나 실제로 公正取引委員會의 심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권고심결 내지 시정권고 제도는 2005년 법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권고제도 폐지의 주된 이유는 동의심결과의 제도적 중복을 해소하고, 정식의 심판절차에 의한 심결을 확대하는 것이 경쟁정책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주된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권고제도는 심판개시결정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9) 村上政博, 전계서, 440면.

10) 丹宗曉信·岸井大太郎, 獨占禁止手續法, 有斐閣, 2002, 57-58면(栗田 誠 집필부분).

것인 만큼, 동의심결제도와 절차적으로 중복될 여지는 없다. 또한 권고심결이 위반사실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법적인 확정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교섭에 따른 일종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기능을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율에 기초한 事前的인 분쟁해결이라는 고유한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권고제도의 폐지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¹¹⁾

라. 긴급정지명령제도

公正取引委員會는 심사·심판절차를 거쳐 배제 조치등을 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당해행위, 의결권의 행사 혹은 회사 임원의 업무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동위원회는 정지명령의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긴급명령사건은 동경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마. 심결취소소송

(1) 심결취소소송개관

公正取引委員會는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심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경고등재판소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심결의 기초가 된 사실을 입증하는 실질적 증거가 없는 경우 및 심결이 헌법 기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심결은 취소한다.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는 최고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다. 독점적 상태에 대한 조치를 명한 심결은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2) 소송에서의 심리

법원은 위원회의 사실인정을 존중하여야 하고 심판에서 조사된 증거로부터 당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의 점만 심사할 수 있다. 이를 실질적 증거 법칙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사건을 환송하여야 한다.

(3) 동의심결 등의 취소소송

동의심결은 피심인에 의한 위반행위의 자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반행위의 존부를 취소소송 등에서 다룰 수 없다. 피심인이 다룰 수 있는 것은 배제 조치 등의 내용이 제출한 계획서와 다른 경우 동의심결의 제출이 위원회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11) 伊從 寛, 獨禁法の事前審判制度と勸告制度の廢止の問題點”, NBL no. 816, 2005. 9, 24면 이하 참조.

5.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처벌절차

(1) 형사처벌

사적독점의 금지, 부당한거래제한조치, 부당한거래제한의 국제계약의 금지 사업자단체의 활동규제, 주식보유 인원 견인의 규제에 관하여는 배제 조치 등 행정적 규제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종업원과 아울러 법원도 처벌하며 나아가 위반행위의 계획 및 실행을 알면서 방지조치를 채용하지 아니한 법인 단체의 대표자도 처벌하는 이른바 3벌(三罰)규정을 두고 있다.

(2) 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독점금지법 위반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고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재량권을 가지는 반면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은 불기소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고발권을 거의 행사하니 않아 1990년 고발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여전히 고발을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민사적집행절차

(1) 금지명령청구소송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로 인한 현전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위원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위원회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침해정지사유의 범위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6. 집행절차 운영의 현황 및 결론

가. 公正取引委員會의 사건처리절차 현황¹²⁾

12) 公正取引委員會 審査局 管理企劃課, 2005年度 實績評價書 참조.

다음의 <표 1>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公正取引委員會에서 다루어진 私的獨占禁止法 위반사건의 처리현황이다.

<표 1> 사적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처리현황

(단

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신 고 건 수		479	770	572	560	944
사건처리건수	법적조치	18	38	37	25	35
	경고	17	15	17	13	9
	주의	36	26	49	75	60
	조사중단	3	8	5	10	16
	총 계	74	87	108	123	12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公正取引委員會가 다루고 있는 사건처리와 법적조치 그리고 신고 자체는 우리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체 신고건수 중에서 사건화 되는 비율이 현저히 낮는데, 2000년 15.4%, 2001년 11.3%, 2002년 18.9%, 2003년 22.0%, 2004년 12.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公正取引委員會는 신고로부터의 단서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신고건수의 사건처리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전체 사건처리건수뿐만 아니라 법적조치 건수가 낮은 것도 公正取引委員會 사건처리절차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되고 있다. 公正取引委員會 스스로 경고와 같은 행정지도적 조치를 억제하고, 법적 조치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¹³⁾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특징이 우리와는 다른 문제의식을 낳고 있다. 즉 우리가 전체적인 사건처리건수와 법적조치의 수를 억제함으로써, 사건처리절차의 효율성을 기하려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오히려 이를 확대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3) 이러한 노력이 公正取引委員會의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村上政博, “獨占禁止法の執行手續および執行”, 後藤 晃・鈴木興太郎 編, 日本の競争政策, 東京大學出版會, 1999, 443면.

나. 公正取引委員會 사건처리절차의 실효성 분석¹⁴⁾

개별 사건처리에 관하여, 처리기간의 측면에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2003년에 개별 사건의 처리에 평균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에 비하여, 2004년에는 평균 약 8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건처리절차의 효율성을 투입된 요소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도 제시되고 있다. 즉 개별 사건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서, 법적조치(대부분의 경우 권고)에 투입된 인력·시간을 100으로 하여 다른 조치에 투입된 인력·시간을 비교수치로 환산하는 방식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警告의 경우 2003년에 55에서 2004년에 23으로, 注意의 경우 2003년에 14에서 2004년에 10으로 감소되었고, 조사중단의 경우는 2003년에 25에서 2004년에 2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公正取引委員會는 私的獨占禁止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자평하고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따른 투입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지속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 사건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우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위반 유형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법위반 유형으로서, 가격카르텔과 입찰담합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2004년 전체 법적 조치가 취해진 사건에서 6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이나 공공조달에 있어서 덤핑수주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덤핑수주의 문제에 대하여 公正取引委員會는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성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두드러진다. 다음의 <표 2>와 <표 3>은 각각 위반유형별 사건처리와 법적 조치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4) 公正取引委員會 審査局 管理企劃課, 2005年度 實績評價書에서, 사건 별 처리기간이나 투입된 시간과 인력에 관한 분석에 기초함.

<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사건처리 현황(2000-2004)

(단위: 건)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적독점		2	2	2	3	5
카르텔	가격카르텔	10	8	10	4	5
	입찰담합	14	37	35	19	22
	기타카르텔	1	2	5	1	1
	소계	25	47	50	24	28
불공정거래방법		39	26	44	76	76
사업자단체위반행위		8	12	12	20	11
합 계		74	87	108	123	120

<표 3> 위반행위 유형별 법적조치 현황(2000-2004)

(단위: 건)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적독점		0	0	0	1	2
카르텔	가격카르텔	1	3	2	3	2
	입찰담합	10	33	30	14	22
	기타카르텔	1	0	1	0	0
	소계	12	36	33	17	24
불공정거래방법		6	2	3	7	8
사업자단체위반행위		0	0	1	0	1
합 계		18	38	37	25	35

한편 시장의 경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산업, 예를 들어 정보통신산업, 공익사업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사건처리절차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경쟁정책의 좀 더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입찰담합과 같은 범위반 사례가

빈발하는 유형이나 경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과징금감면제도의 활용이나 단서정보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위반행위나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의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이 요청된다.

결국 이상의 개선 논의가 반영되어 獨占禁止法の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부분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5년 이후의 사건처리절차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라. 결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에 있어서 경쟁법 즉 독점금지법의 제정은 2차대전 후 미군정하에서 당시의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이러한 개혁을 장기적으로 확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타율적 제도 도입은 일본 정부의 소극적 집행과 완화 입법으로 50년대와 60년대에는 독점금지법이 거의 활용되지 아니하였다. 1970년대 카르텔 과징금제도 도입 등으로 독점금지법이 비교적 활성화 되었으나 1980년대에는 다시 저조하였고 1990년대 미·일 구조조정협의를 계기로 과징금의 강화, 형사벌의 강화, 公正取引委員會 조직의 강화, 민사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적극적인 법운용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리사건 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에 비하여 일본 公正取引委員會 등의 활동은 소극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Ⅲ. 싱가포르의 경쟁절차법

-목차-

1. 서론
2.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3.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의 집행절차
 - 가. 집행의 법적 근거
 - (1) 경쟁제한적 협정
 - (2) 지배적 지위의 남용
 - (3) 기업결합
 - (4) 수직적인 경쟁 제한적 협정
 - (5) 적용 제외
 - 나.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의 집행지침제정
 - 다. 조사권
 - 라. 침해중지명령
 - 마. 가처분명령
 - 바. 과징금의 부과와 감면제도
 - (1) 과징금부과처분
 - (2) 과징금 감면제도
4. 불복절차
5. 법원에 의한 집행
 - 가. 형사처벌
 - 나. 민사적 집행절차
 - (1) 금지청구소송
 - (2) 손해배상청구소송

Ⅲ. 싱가포르의 경쟁절차법

1. 서론

싱가폴에서는 경쟁법(Competition Act)이 2003년 2월의 경제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무역산업성에서 기초 작업을 했다. 경쟁 법안은 2번에 걸치는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mment)절차를 거쳐 2004년 10월 19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2004년 법률 제46호). 동법은 경쟁법위원회에 관한 내용만 2005년 1월에 시행이 되어, 경쟁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침 등의 마련 작업을 실시하고, 상소절차규정(Appeals 제4장)은 2005년 9월에 발효하였다. 2006년 1월에는 기업 결합 관계 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1월에는 기업결합관계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2.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경쟁법의 집행기관은 2005년 1월에 설치된 경쟁법위원회(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이다. 동위원회는 무역산업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위원장 및 2명 이상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제5조), 그 하위에 사무국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무역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는 기간이 되며 재임 가능하다.

무역산업부장관은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외에 위원회의 정책에 관한 지시(제8조), 사무국장 임명의 승인(제10조) 등을 한다.

경쟁법위원회는 경쟁법에 근거하는 배제명령조치, 적용제외의 승인, 입회검사·보고 징수 등의 심사활동, 지침의 공고 등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싱가포르 경쟁법위원회의 집행절차

가. 집행의 법적 근거

(1) 경쟁제한적 협정

싱가폴 국내에 있어 경쟁을 제한 또는 왜곡되게 할 목적을 가지거나 효과가 있는 사업자 사이의 협정, 사업자가 소속하는 단체에 의한 결정 및 공동행위가 금지되고 있다(제34조).

- (i)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입 또는 판매의 가격 또는 거래의 조건을 구속하는 것
- (ii) 생산, 시장, 기술 혁신 또는 투자를 제한 또는 지배하는 것
- (iii) 시장 또는 구입처를 할당하는 것
- (iv) 동등한 거래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 의해서 차별적인 조건부로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 (v) 거래의 상대방에게 요구 또는 상관습에 의해,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추가적 의무를 지게 하는 것

(2) 지배적 지위의 남용

싱가폴 국내 시장에 있어서 일 또는 복수의 사업자에 의한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이하의 행위가 금지된다(제47조).

- (i) 경쟁자에 대해서 약탈적 행위를 하는 것
- (ii) 생산, 시장 또는 기술 혁신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소비자에게 해를 주는 것
- (iii) 동등한 거래에서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조건을 붙여서 해당 상대방에게 경쟁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 (iv) 거래의 상대방에게, 요구 또는 상관습에 의해, 계약과는 관계가 없는 추가적 의무를 지게 하는 것

(3) 기업결합

싱가폴 국내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 또는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기업 결합은 금지된다(제54조).

(4) 수직적인 경쟁 제한적 협정

수직적인 협정은 무역산업부장관이 명령에 의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34조의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적용 제외

정부 및 특별 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이들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3조). 또, 공익에 이바지하는 서비스, 법령 또는 국제협정상의 요청, 수직적 협정, 그 밖에 적절한 사업 규제를 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해서는 경쟁법의 적용 제외로 되어 있다(제35조, 제48조, 제55조).

나. 싱가포르경쟁법위원회의 집행지침제정

2007년 6월에 경쟁법위원회는 경쟁법의 범조항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지침(Guidelines on Enforcement)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은 싱가포르경쟁법위원회가 집행활동을 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분석적이며 절차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사례와 그 결과의 평가는 특정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동 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i) 제34조 금지- 경쟁을 방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해치는 협정
- ii) 제47조 금지: 지배적 지위의 남용
- iii) 시장정의(Market definition)
- iv) 조사권한
- v) 집행
- vi) 공동행위사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관대한 취급

- vii) 지침 또는 결정을 위한 고지의 제출
- viii) 과도기적인 합의
- ix) 지적재산권의 취급
- x) 제54조 금지- 합병

다. 조사권

조사절차에 대하여 싱가포르경쟁법위원회는 조사권한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the Powers of Investigation)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경쟁법위원회는 (i)문서와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권한, (ii)수색장소에 출입할 권한, (iii)수색영장 유무에 상관없이 수색장소에 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위원회는 경쟁법 제34조, 제47조 및 제54조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상기 처분을 실시하기에 즈음해 위원회는 심사를 실시하는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제62조).

- (i) 통지로써 문서의 작성 또는 정보 제공 또는 진술 명령을 행하는 것(제63조)
- (ii) 입회검사(제64조)
- (iii) 강제입회검사

위원회 및 심사관은 상기(i) 또는 (ii)의 수단에 의한 정보의 수집이 곤란한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근거하는 이하의 수사를 행할 수 있다(제65조). 그 방법으로는 ① 조작에 관련하는 서류 등을 보관 유지하고 있는 인물의 수색, ② 문서의 복사 또는 발췌, ③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문서의 압수, ④ 증거의 파기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또는 ⑤ 수사를 위해 사업소에서 기기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이 있다.

라. 침해중지명령

위원회는 경쟁제한적 협정(제34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제47조) 및 기업결합(제54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배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업 결합(제54조)에 관한 명령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무역산업부장관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제54조의 적용의 제외를 요구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무역산업부장관에 의한 결정이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제68조).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위원회가 명령하는 바에 의해 위반행위를 배제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명령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69조).

- (i) 제34조에 위반하는 협정의 파기 또는 수정
- (ii) 제47조에 위반하는 행위의 수정 또는 배제
- (iii) 제54조에 위반하는 기업결합의 수정 또는 만류
- (iv) 합법으로 집행가능한 협정을 체결해 반경쟁적 효과의 방지 또는 감축을 도모
- (v) 위반과 관련되는 영업활동, 자산 또는 주식의 처분
- (vi) 위원회가 결정하는 제재금의 지불(국내총매상고의 10%이하×3년간을 넘지 않는 범위)
- (vii) 처분의 이행을 보증하는 채권, 보증서 또는 그 외의 형태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

그 명령은 침해자 이외에도 경쟁법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에게 협정이나 행위를 시정하거나 당해 협정이나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명령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가지나 예외적

으로 경쟁법위원회는 명령을 이행하는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경쟁법위원회는 법원규칙에 따라서(322장 제5조)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명령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으로 그 명령은 당해 지방법원의 명령과 동일한 강제력을 가지게 된다.

마. 가치분명령

경쟁법위원회는 경쟁법 제34조 또는 제47조 금지규정의 위반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는 가치분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가치분명령은 최종적 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 과징금의 부과와 감면제도

(1) 과징금부과처분

위원회는 2006. 1. 1. 이후에 고의·과실로 경쟁제한적 협정(제3조), 지배적 지위남용(제47조)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액 지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과징금 감면제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쟁 당국에 감면신청을 한 순서에 따라 제재금이 감액된다. 경쟁 당국에 의한 심사 개시전의 제1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100%면제된다. 심사 개시 후의 제1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최대 100%면제된다. 그 외 신청자에 대해서는 제재금이 최대 50%면제된다(사업자수에 대한 상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 경쟁 당국에 대해, 카르텔 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 서류, 증거를 제공할 것
- 경쟁 당국에 의한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쟁 당국에 계속적으로 협력할 것
- 경쟁 당국에의 보고 이후, 해당 카르텔 행위에의 참가를 삼갈 것(경쟁 당국이 지시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 해당 카르텔을 선도한 사업자가 아닐 것
-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해당 카르텔 행위에 참가하도록 강제한 사업자가 아닐 것. 덧붙여 면제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하의 사항이 고려된다.
-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보고를 행한 단계
- 경쟁 당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
- 사업자의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4. 불복절차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경쟁상소평의회에 상소를 할 수 있다. 동 평의회는 무역산업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는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대법원의 판사 자격이 있는 자가 임명된다(제72조). 동 평의회는 지방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있다(제73조). 또, 동 평의회 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74조).

5. 법원에 의한 집행

가. 형사처벌

이하의 위반행위 등을 하여 본 법 상 유죄로 여겨졌을 경우,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만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들이 병과된다.

- (i)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경우등 (제75조)
- (ii) 문서를 파괴, 은닉했을 경우 (제76조)
- (iii) 허위의 정보 제공을 했을 경우 (제77조)
- (iv) 법집행을 방해했을 경우등 (제78조)

나. 민사적 집행절차

(1) 금지청구소송

경쟁제한적 협정(제34조), 지배적 지위의 남용(247조) 및 기업결합(제54조)에

위반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선언 등의 방법에 의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86조). 이와 같은 금지청구소송은 위원회의 위반결정(항고부의 결정,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라야 제기 가능하다.

(2)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1)항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86조). 손해배상청구도 위원회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한 금지청구와 같다.

IV. 대만의 경쟁절차법

-목차-

1. 서론

2. 공평교역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가. 공평교역위원회의 조직

나. 공평교역위원회의 권한

3. 규제의 개요

가. 카르텔행위(제7조)

나. 독점

다. 기업 결합

라. 불공정경쟁행위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18조)

(2) 공정경쟁의 저해(제19조)

(3) 다른 상품, 서비스라고 오인시키는 행위(제20조)

(4) 부당표시(제21조)

(5) 다른 사업자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정보의 유포(제22조)

(6) 다단계판매(제23조)

(7) 기만적 또는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제24조)

마. 적용 제외

4. 법집행절차

가. 사건 심사

나. 조치

5. 불복신청

6. 법원에 의한 집행

가. 형사처벌

(1) 주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2) 양벌규정(제38조)

나. 민사적 집행절차

(1) 침해금지 청구소송

(2) 청구소송

IV. 대만의 경쟁절차법

1. 서론

대만의 경쟁법은 公平交易法(Fair Trade Law of 2002)이며, “거래에 있어서의 질서의 유지, 소비자 이익의 보호, 공정한 경쟁의 확보 및 국민경제의 안정 및 번영의 촉진을 도모할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여, 1991년 2월에 제정되어 1992년 2월에 시행되었다. 공평교역법의 집행을 위하여 행정원의 직속 기관으로 公平交易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다.

2. 공평교역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가. 공평교역위원회의 조직

공평교역위원회는 9명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7명)과 사무국(5처 5실, 215명 [2006년 6월말 현재])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학식 경험자 중에서 수상이 선정하여, 총통이 임명한다. 정원의 과반수 이상을 동일 정당에 속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나. 공평교육위원회의 권한

공평교역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제25조).

- (i) 공정거래에 관한 정책 및 관계 법규의 제안
- (ii) 경쟁법이 규정하는 공정거래의 심의
- (iii) 사업자의 활동 및 경제 상황의 조사
- (iv) 경쟁법위반사안의 조사 및 처분
- (v)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사무

3. 규제의 개요

가. 카르텔행위(제7조)

카르텔행위란 경합하는 다른 사업자와 계약, 협정, 기타 상호합의 하에 공동하여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을 결정하거나 수량, 기술, 제품, 설비, 거래의 상대방 또는 지역을 구속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서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독점

(1) 독점이란 단일의 사업자가 경쟁에 완전히 직면하는 일이 없거나 특정 시장에 있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시장이란 특정의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해, 사업자가 경쟁에 종사하고 있는 장소로서의 지리적 영역 또는 일부분을 말한다.

복수의 사업자가 가격설정에 있어서의 경합을 실제로 하지 않으나, 다른 경제 주체와의 전체적인 제관계가 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는 독점으로 간주된다(제5조). 또한, 특정 시장에서,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는 단일 사업자,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는 2개의 사업자, 또는 4분의 3의 지분을 가지는 3개의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는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제5-1조).

(2) 독점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독점사업자는 이하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제10조).

- (i) 경쟁자의 시장참가에 대한 방해
- (ii) 가격의 부당한 설정, 유지, 또는 변경
- (iii) 자기에게 유리한 거래의 부당한 강요
- (iv) 그 외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다. 기업 결합

(1) 이하에 열거하는 상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합은 사전에 공평교역위원

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제11조).

(i) 사업자의 결합시장점유율이 3분의 1이상일 때

(ii) 결합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하나의 시장점유율이 4분의 1이상일 때

(iii) 결합에 참가하는 사업자의 하나의 전 회계년도 매출이 공평교역위원회가 공고하는 금액을 상회할 때

(2) 공평교역위원회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심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제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1조).

(i) 어느 기업결합참가기업도 다른 참가기업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의 50% 이상, 혹은 자본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

(ii) 의결권부 주식의 50% 이상 혹은 자본의 출자에 의해서 대등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iii) 1개 사업자가 사업 및 자산 모두 혹은 주요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설립한 사업자에게 할당한 경우

(iv) 회사법 제167조 제1항 혹은 증권법 제28-2조의 조건에 따라, 공평교역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황(다른 사업자의 의결권부 주식 혹은 전체 자본의 3분의 1까지 획득) 내에서 당초 주식을 소유한 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라. 불공정경쟁행위

불공정경쟁행위로서 이하의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18조)

(2) 공정경쟁의 저해(제19조)

(i) 간접 보이콧, (ii) 차별적 취급, (iii) 협박 등에 의한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의 탈취, (iv)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참가강제, (v) 기업비밀 등의 취득, (vi) 구속조건부거래가 해당한다.

- (3) 다른 상품, 서비스라고 오인시키는 행위(제20조)
- (4) 부당표시(제21조)
- (5) 다른 사업자의 신용을 해치는 허위 정보의 유포(제22조)
- (6) 멀티판매(제23조)
- (7) 기만적 또는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제24조)

마. 적용 제외

카르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 전체와 공공 이익에 유익하고, 한편 공평교역위원회의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4조).

(1) 비용인하, 품질 개량 또는 효율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규격과 형식을 통일하는 경우

(2) 기술의 향상, 품질 개선, 비용인하 또는 효율 증진을 위해서 상품 또는 시장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리적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전문분야의 개발을 행하는 경우

(4) 수출의 확보 또는 촉진을 위해, 오로지 해외시장의 경쟁에 대해 약속했을 경우

(5) 무역의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상품의 수입에 대해 공동행위를 취하는 경우

(6) 불황기에 상품의 시장가격이 생산비용의 평균을 하회하여, 해당 업종이 사업자로서 존속이 어려워졌거나 또는 생산과잉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수요에 적응하도록 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량, 설비 또는 가격의 제한 등 공동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7) 중소기업의 경영효율을 증진 하거나 또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 결합에 대해서, 경제상의 이익이 경쟁제한의 이익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기업결합은 금지되지 않는다.

4. 법집행절차

가. 사건 심사

사건 심사는 단서에 의해서 개시되어 이하의 절차를 채택한다(제27조).

- (i)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출두를 명하여, 의견 진술을 하도록 통지한다.
- (ii) 관계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통지해, 장부 문서 및 그 외 필요한 자료 또는 증거품을 제출시킨다.
- (iii) 관계 단체 또는 사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그 외의 장소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및 관계자는 제27조에 근거해 압수된 자료 또는 증거품의 열람, 복사 등을 할 수 있다(제27-1조).

- (i) 처분안 또는 사안의 준비를 위한 작업문서
- (ii) 법 또는 규칙으로 보장되는 국가방위, 군사, 외교 및 그 외 비밀문서
- (iii) 법 또는 규칙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기업비밀 등을 포함한 문서
- (iv)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 (v) 사회 질서, 공공안전 또는 기타 사회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공적 의무를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

나. 조치

(1) 공평교역위원회는 제10조(독점), 제14조(카르텔), 제20조(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오인시키는 행위)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를 한다(제35조).

(2) 공평교역위원회는 동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합을 실행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결합의 금지 및 일정 기한 후의 사업자의 분리 등 필요한 처분을 행할 수 있다(제13조 1항).이 처분에 위반한 사업자는 해산, 영업 정지등의 처분을 받는다(제13조 2항).

(3) 공평교역위원회는 제19조(불공정 경쟁)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정지명령 또는 시정조치를 내린다(제36조).

(4) 과징금의 부과처분

공평교역위원회는 공평교역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에 대한 배제를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 있는 것 외에 5천 신대만 달러 이상 25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은 기한 후에 재차 명할 수 있다(제40조, 제41조).

5. 불복신청

공평교역위원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동위원회를 경유하여 행정원에 대해 소원 청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사법원에 속하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6. 법원에 의한 집행

가. 형사처벌

(1) 주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i) 제10조,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공평교역위원회의 배제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따르지 않았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이 병과된다. 또, 제23조(다단계 판매)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이것이 병과된다(제35조).

(ii) 제19조 위반 (불공정경쟁)

공평교역위원회의 배제명령에 정해진 기한 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 천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이 병과된다(제36조).

(iii) 제22조 위반 (허위 정보의 유포)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5 천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이들이 병과된다(제37조).

(iv) 제12조 위반 (기업결합의 금지명령)

제13조에 규정된 금지명령과 함께 10만 신대만 달러 이상 5000만 신대만 달러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제40조).

(2) 양벌규정(제38조)

이상의 벌칙에 대해서는 법인이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법인도 해당 조항에 대응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나. 민사적집행절차

(1) 침해금지 청구소송

공평교역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받은 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제30조).

(2)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평교역법 위반행위에 의한 피해를 받은 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해 침해의 중지 외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1조). 이 경우 법원은 그 위법행위가 고의인 경우에는 실손해의 3배의 범위내에서 실손해를 초과하여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위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피해자는 이익액을 손해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2조).

V. 인도네시아의 경쟁절차법

-목차-

1. 서론

2.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가. 위원회의 조직

나. 위원회의 권한

3. 규제의 개요

가. 금지되는 협정

(1) 과점(공동 지배)(제4조)

(2) 가격구속(제5조~ 제9조)

(3) 시장분할(제9조)

(4) 배타적 행위(제10조)

(5) 카르텔(상술한 (1)~(4)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제11조)

(6) 트러스트(제12조)

(7) 매수과점(제13조)

(8) 수직적 통합(제14조)

(9) 폐쇄적 협정(제15조)

(10) 외국 사업자와의 협정(제16조)

나. 금지되는(사실상의) 행위

(1) 독점(제17조)

(2) 구입 독점

(3) 시장지배(제19조~ 제21조)

(4) 공모(제22조~ 제24조)

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제25조)

라. 기업 결합

(1) 직무의 겸임(제26조)

(2) 주식 소유(제27조)

(3) 합병등

마. 적용 제외 규정(제50조)

4. 법집행 절차

가. 심사

나. 제재 조치등

5. 불복절차

가. 지방법원에의 제소

나. 대법원에의 상소

6.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적 처벌(제48조~제49조)

나. 민사적 구제

V. 인도네시아의 경쟁절차법

1. 서론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은 「독점적 행위 및 불공정한 사업경쟁의 금지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법 1999년 제5호(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5 of the Year 1999 Concerning the Prohibition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Competition. 이하, 「경쟁법」이라고 한다)」로서 1999년 3월에 제정·공포되어 1년반의 시행 준비 기간의 뒤, 2000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경쟁법의 집행기관을 위하여 사업경쟁감시위원회(영어명 Commission for the Supervisory of Business Competition, 인도네시아어명 Komisi Pengawas Persaingan Usaha(약칭 KPPU).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른 정부 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가. 위원회의 조직

위원회는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바 2004년 12월 현재의 위원의 수는 10명이다. 위원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이 선출되고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다(재선 가능). 위원의 임기는 5년에 1회의 재임이 허용되고 있다. 그 자격은 실무계에서의 경험 또는 법률 또는 경제의 학식을 가질 것, 지명시에 30세 이상 60세 이하일 것 등이다.

또한,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2004년 12월 현재, 104명의 직원이 있다.

나. 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협정행위의 심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심사,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규제의 개요

경쟁법은 그 제정과정에 있어서, 독일 경쟁제한금지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른바 대륙법계 입법에 속하고, 행위유형 마다 상세한 규정이 두어지고 있다.

가. 금지되는 협정

(1) 과점(공동 지배)(제4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독점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경쟁을 야기하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또는 3개 사업자 또는 1개 사업자 그룹이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되어 해당 시장의 75%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2) 가격구속(제5조~ 제9조)

사업자가 경쟁자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 (i) 판매가격의 결정(제5조)
- (ii) 가격차별(제6조)
- (iii) 독점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염가판매(제7조)
- (iv) 재판매가격 유지(제8조)

(3) 시장분할(제9조)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판매 지역 또는 시장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4) 배타적 행위(제10조)

사업자가 경쟁자와의 사이에 다른 사업자가 국내 시장 또는 국외 시장에 있

어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업자가 경쟁자와의 사이에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다른 사업자에게 손실을 주거나 또는 주게 되거나 또는 해당 다른 사업자의 해당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 또는 구입을 제한하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카르텔(상술한 (1)~(4)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제11조)

사업자가 경쟁자와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수량 또는 판매 수량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6) 트러스트(제12조)

사업자가 경쟁자와의 사이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합작회사 또는 보다 대규모 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개별 회사의 존속을 확보함에 의해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7) 매수과점(제13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공동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입 또는 수요를 지배하는 것으로써 그 가격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또는 3개 사업자 혹은 1개 사업자 그룹이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되어 해당 시장의 75%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는 상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8) 수직적 통합(제14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직접 또는 간접의 생산 공정에 포함되어 있는 복수의 제품의 생산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불공정한 사업 경쟁 또는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9) 폐쇄적 협정(제15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사이에,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 (i)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 대한 고객 또는 판매 지역의 제한
- (ii)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 대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팔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등에 대해 결정함에 의하여,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요자에 대해,
 - a.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팔거나 또는
 - b.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배타 조건부 거래를 강요하게 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10) 외국 사업자와의 협정(제16조)

사업자가 외국 사업자와의 사이에,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게 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금지되는(사실상의) 행위

(1) 독점(제17조)

사업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를 지배하는 것으로써,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신규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단독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그룹이 일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되어 해당 시장의 50%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2) 구입 독점

사업자가 동일한 관련 시장에 있어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 구입을 지배하거나 또는 유일한 구입자가 되는 것으로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3) 시장지배(제19조~ 제21조)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하여,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게 되는, 다음의 행위의 하나 또는 복수의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다른 사업자의 신규 참가 저해
- 수요자에 대한 배타 조건부 거래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통 또는 판매의 제한
- 특정의 사업자에 대한 차별 행위

또한, 사업자가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원가를 하회하는 가격 또는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 공모(제22조~ 제24조)

사업자가 타자(other party)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모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 (i) 입찰에 있어서 수주 예정자의 결정
- (ii) 경쟁자의 사업상의 입수

(iii) 경쟁자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또는 판매의 방해

다.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제25조)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 소비자가 경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목적으로의 거래조건의 결정
- 시장 및 기술개발의 제한
- 신규 참가의 저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는 상기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단독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그룹이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되어 해당 시장의 50%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 2 또는 3개 사업자 또는 1개 사업자 그룹이 특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계되어 해당 시장의 75%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라. 기업 결합

(1) 직무의 겸임(제26조)

동일인이 경쟁 관계등에 있는 복수의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역을 겸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주식 소유(제27조)

사업자는 경쟁자의 주식의 과반을 소유하는 것으로써, 상기 다의 시장 지배적 지위에 해당하는 시장 구조를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

(3) 합병등

사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제휴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독점적 행위 또는 불공정한 사업 경쟁을 가져오는 것은 금지된다(제28조).

합병등에 대해서는 자산액 또는 매각 가액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만(행위일부터 30일 이내)(제29조), 신고 기준액과 관련되는 행정입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마. 적용 제외 규정(제50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법의 적용은 제외된다.

-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협정 및 행위
- 지적재산권(프랜차이즈 계약도 포함한다)과 관련되는 협정
- 경쟁을 제한/저해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표준기술화
- 재판매가격 유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대리점 계약
-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협정
- 인도네시아 정부가 체결한 국제협정
- 국내 시장의 수요 또는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수출과 관련되는 계약 및 행위
-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의 사업자
- 조합원에 대한 편의의 공여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활동

4. 법집행 절차

가. 심사

위법행위를 알게 된 자는 이를 신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탐지로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신고에 의한 예비심사는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증인신문, 감정 등을 위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및 기업 등은 심사와 조사에 요구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정식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은 30일 더 연장 될 수

있다.

나. 제재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은 공개리에 선고되어야 하며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결정을 송달 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동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로서 해당 행위의 배제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10억 루피아 이상 250억 루피아 이하(대략 12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7조).

5. 불복절차

가. 지방법원에의 제소

관계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44조 제2항). 지방법원은 제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소송을 심리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지방법원은 심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5조 제2항).

나. 대법원에의 상소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대법원은 (Supreme Court, Mahkamah Agung)에 상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상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하여야 한다(제45조 제3항, 제4항).

6.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적 처벌(제48조~제49조)

위원회는 자체적인 심사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청(각 지방 검찰청)에 대해, 고발을 한다. 검찰청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기소를 하여, 이 기소에 따라 법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리하여 형사처벌의 내용을 결정한다.

형사제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행위유형(적용법조) 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위유형	내용
과점, 시장분할, 배타적 행위, 카르텔, 트러스트, 수직적 통합, 독점, 시장지배, 지배적 지위의 남용, 주식 취득 및 합병위반	250억 루피아 이상 100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또는 5월 이하의 금고형
가격구속, 부당염매, 재판매가격유지, 차별가격, 입찰담합, 공모 및 임원직점임 등	50억 루피아 이상 250억 루피아 이하의 벌금 또는 5월 이하의 금고형

또, 추가적인 형사처벌로서 사업 면허의 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임원 취임의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나. 민사적 구제조치

인도네시아 경쟁법상으로는 위법행위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VI. 한국의 경쟁절차법

-목차-

1. 서론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 가. 위원회의 구성
 -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제36조)
 - 다. 회의의 구분 및 심의의 공개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집행절차
 - 가. 집행의 법적 근거
 -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제2장)
 - (가)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제2조 제7호)
 - (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4조)
 - (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3조의 2)
 - (마)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 (바) 독점적 또는 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등
 -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제3조)
 - 가) 기업결합의 제한
 - 1)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추정(제7조 제4항)
 - 3) 기업결합 제한의 적용 제외(제7조 제 2항, 시행령 제 12조의 4)

- 4) 기업 결합의 신고(제12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나) 지주회사의 제한
 - 1) 지주회사의 정의(제2조 제1항의 2,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 2) 지주회사의 신고(제8조, 시행령 제15조)
 - 3) 지주회사 등의 행위의 제한(제8조의2)
-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장)
-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장)
 - (가) 불공정거래행위
 - (나) 지침의 제정
 - (다) 공정경쟁규약
- (5) 사업자단체(제6장)
 - (가)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제26조)
 - (나) 지침의 제정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7장)
- (7)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8장)
- (8) 적용제외(12장)
- (9) 기타
 - (가)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련되는 조정(제63조 제1항)
 - (나) 경쟁제한적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조정(제63조 제1항, 제3항)
- 나. 조사·처분
 - (1) 조사등의 절차(제10장)
 - (가) 개관
 - (나) 위반행위의 단서(제49조)
 - (다) 위반행위의 조사(제50조)
 - (2) 심결절차

(가) 심결절차의 진행

(나) 심결 : 배제 조치

(다) 심결 : 과징금의 부과

(라) 기왕의 행위에 대한 조치

다. 신고자에 대한 조치감면제도(제22조의 2, 시행령 제 35조)

(1) 서

(2) 감면 대상자

(3) 감면 절차

(4) 감면 플러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는지의 판단기준(제2조)

라.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법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9 신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나. 심결취소청구소송

5.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처벌

(1) 벌칙의 정도

(2) 고발

나. 손해배상청구

VI. 한국의 경쟁절차법

1. 서론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12월에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본문 15개장 10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이며 제2장(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내지 제8장(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의 내용은 실체규정이고 제9장의 전담기구 내지 제10장의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은 절차규정이고 제11장 손해배상 내지 제14장 벌칙에 관한 내용은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2.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가. 위원회의 구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국무회의 및 관계 국무회의 구성원) 1명 및 부위원장 1명(차관급), 상근 위원 3명 및 비상근 위원 4명의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위원은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37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재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제39조).

위원은 (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해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ii)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iii)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자, (iv) 기업경영 또는 소비자보호 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제37조). 위원은 (i)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ii) 장기간의 심신 쇠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파면되지 않는다(제40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본부(기획·홍보본부, 경쟁정책본부, 소비자정책본부, 경쟁법·정책집행본부), 2국(카르텔국, 사업협력국), 2실(감사담당실, 총무실), 5지방사무소(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으로 구성되고, 직원수는 484명(2005년 12월말 현재)이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제36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i)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법 제2장)
- (ii) 기업결합의 규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법 제3장)
- (iii)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법 제4장 및 제6장)
- (iv)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의 규제에 관한 사항(법 제5장 및 제7장)
- (v) 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법 제8장)
- (vi)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 조정 등의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법 제63조 및 제64조)
- (vii)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제36조의2)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 정부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협정에 따라, 외국 정부의 법률의 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및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 정부로부터 법률의 집행에 대하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지원 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으면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viii) 기타 법령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84년),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1995년) 등을 관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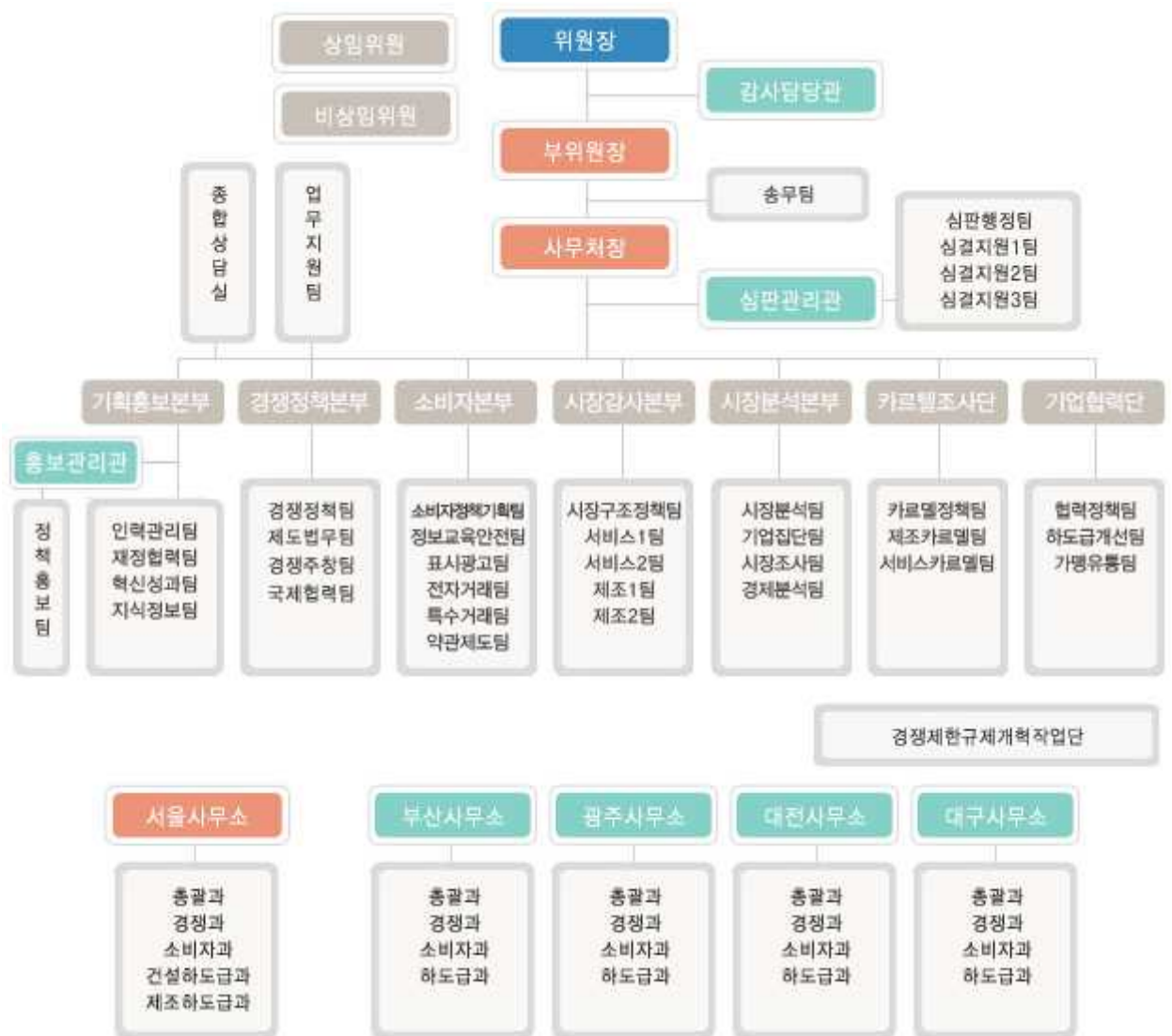
다. 회의의 구분 및 심의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 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근 위원 중 1명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제37조의 2).

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제37조의 3 제1항). (i) 법령 등의 해석 적용에 관해서,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ii)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iii)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iv)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v)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회의는 상기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동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를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등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3조).



3.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집행절차

가. 집행의 법적 근거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규제(제2장)

(가)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할 수 있다(제3조의2).

(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제2조 제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공급자 또는 수요자이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또는 역무의 가격, 수량, 품질 그 외 거래조건을 결정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참여 장벽의 유무 및 그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이 고려된다. 다만, 관련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연간 매출액 또는 구입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4조)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한다.

(i)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의 사업자

(ii) 시장점유율 상위 3사의 합계가 75%이상인 경우의 각 사업자(시장점유율 10%미만의 사업자를 제외한다)

(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3조의 2)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i) 상품의 가격 또는 역무의 대가(이하 「가격」이라고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ii) 상품의 판매 또는 역무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iii)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iv)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v)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

(마)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제3조의2).

(바) 독점적 또는 과점적 시장 구조의 개선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또는 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 또는 역무의 공급 또는 수요 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시책의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제3조).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제3조)

(가) 기업결합의 제한

1)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의 금지

누구라도 직접 또는 특수 관계인¹⁵⁾을 통해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¹⁶⁾ (i)주식 보유(제7조 제1항 제1호), (ii)임원겸임(동조 동항 제2호)¹⁷⁾, (iii)합병(동조 동항 제3호), (iv)영업의 양수(동조 동항 제4호) 및 (v)신회사의 설립 참가(동조 동항 제5호)를 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 제1항).

또한, 누구라도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7조 제3항).

2) 「경쟁의 실질적 제한」의 추정(제7조 제4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15) 「특수 관계인」이란 (i)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ii) 동일인 관련자(해당자의 친족, 해당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등), (iii) 경영을 지배하려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업결합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시행령 제11조).

16)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 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제2조 제8호). 또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 집단의 의사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격, 수량, 품질 그 외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이 미치거나 또는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 8호의 2).

17) 임원 겸임에 대해서는 대규모 회사(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시행령 제 12조의 2))가 행하는 경우에만 규제 대상이 된다.

(i) 기업 결합의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당사자의 계열회사(=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제한 것)가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에 합치한다.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해당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 제1위가 된다.
-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 제2위의 회사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 이상이 된다.

(ii) 대규모 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는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3분의 2이상인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결합으로서 해당 기업결합에 의하여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3) 기업결합 제한의 적용 제외(제7조 제 2항, 시행령 제 12조의 4)

다음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규정(법 제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이에 해당는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결합의 당사자가 진다.

(i) 해당 기업결합 이외의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효율성의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에 의한 폐해보다 큰 경우

(ii)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총계가 불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재건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해당 기업결합 없이는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시장에서 계속해 활용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기업 결합의 신고(제12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자산총액 또는 매상액이 1000억원 이상(임원겸임의 경우는 2조원 이상)인 기업결합의 당사자가 되는 회사 등은 다음 사항을 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i)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ii) (i)의 신고 후 주식의 추가취득에 의해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iii) 임원 겸임의 경우

(iv)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양수를 하는 경우

(v)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상술한 기업결합에 관한 신고는 해당 기업결합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제12조 제6항 본문). 다만, 상기(i), (ii), (iv) 및 (v)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던 날 등(시행령 제18조 제5항 참조)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6항 단서). 이 경우, 해당 신고를 한 자는 시행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식 소유, 합병 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지주회사의 제한

1) 지주회사의 정의(제2조 제1항의 2,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해서,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의 회사」를 말한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지주회사에 의해 사업 내용이 지배되는 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의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i) 자본총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액수를 공제한 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소유하는 행위(다만,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시에 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시부터 2년간은 자본 총액을 넘는 부채액을 소유할 수 있다)

(ii) 자회사의 주식을 50% 미만(자회사가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는 30% 미만, 벤처 지주회사의 경우는 20% 미만) 소유하는 행위(적용 제외가 인정)

(iii)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의 회사의 주식을 해당 회사의 발행제주식 총수의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또는 자회사 이외의 국내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적용 제외가 인정)

(iv) 금융지주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국내의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다만, 비금융지주회사로부터 금융지주회사로 전환 등 했을 경우에는 그 날부터 2년간은 해당 국내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v)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가 국내의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다만, 일반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 시에, 국내의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일반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일부터 2년간은 해당 국내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지주회사의 사업관련 손자회사는 국내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다만, 사업관련 손자회사가 될 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계열회사의 경우이며, 사업관련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일 때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의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이며,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8조의2 제4항). 지주회사는 해당 지주회사, 자회사 및 사업관련 손자회사의 주식소유상황, 재무상황등 사업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8조의2 제5항).

2) 지주회사의 신고(제8조, 시행령 제15조)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은 (i)설립의 경우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이내, (ii)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 분할을 통해서 전환하는 경우는 합병 등기일 또는 분할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iii)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또는 자산의 증감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가 되고 있다.

3) 지주회사 등의 행위의 제한(제8조의2)

제8조의2 제2항은 지주회사에 의한 이하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지주회사 설립 또는 전환에 있어서 충족하여야 할 조건이 되고 있다.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제14조, 시행령 제17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을 지정하여, 이러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부채비율 100%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말한다. 모두 공기업집단을 포함한다.

(라) 상호출자의 금지(제9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안된다(적용제외가 인정).

(마) 출자총액의 제한(제10조)

자산총액,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시행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해당 회사의 순자산액의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 된다(적용제외가 인정).

(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0조의2)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국내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안된다(적용제외가 인정).

(사) 금융·보험 회사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제11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국내의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i)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ii)보험업법등의 규정에 의한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iii)해당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에 대해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1조의2)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이것을 공시해야 한다.

(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의 공시(제11조의3)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는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도 시행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 간에 무효가 된다(제19조 제4항).

(i)회사의 소유지배구조 등의 중요사항(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상황 및 그 변동사항 등)

(ii)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미치는 사항(자산 또는 주식의 취득 등)

(iii)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미치는 사항(영업양수 또는 인수, 합병 등)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장)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지를 불문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합의하거나(「부당한 공동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제19조 제1항).

(i)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ii) 상품 혹은 역무의 거래조건 또는 그 대금 또는 대금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iii) 상품의 생산, 출하,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 또는 역무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거래지역 또는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iv) 거래지역 또는 거래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v) 생산 또는 역무의 제공을 위한 설비의 신설·증설·장비의 도입을 방해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

(vi) 상품 또는 역무의 생산 또는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역무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vii)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viii)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사업자간에 무효로 된다(제19조 제4항).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사이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한다(제19조 제5항).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19조 제2항).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장)

(가)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제23조 제1항).

(i)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ii)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iii) 부당한 고객 유인·강제

(iv) 거래상의 지위의 부당 이용

(v)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의 부당한 구속 또는 그 사업 활동의 방해

(vi)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에 정해져 있다(동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동별표 1).

(나) 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23조 제3항).

(다) 공정경쟁규약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규약(이하 「공정 경쟁 규약」이라고 한다)을 정할 수 있다(제23조 제4항). 또한, 해당 공정경쟁규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5항).

(5) 사업자단체(제6장)

(가)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제26조)

사업자 단체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6조 제1항).

(i) 부당한 공동행위

(ii)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의 제한

(iii)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

(iv)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것을 방조하는 행위

(나) 지침의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7장)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행해서는 안된다(제29조 제1항). 다만, 상품 또는 역무를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할 수 없게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43조) 및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허용된다(동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하여 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체결한 재판매가격 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때에는 계약 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제30조).

(7)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8장)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제32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국제계약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33조).

(8) 적용제외(12장)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행위(제58조), 지적재산권(저작권법, 특허법 등)의 권리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제59조) 및 일정한 조합의 행위(제60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로 된다.

(9) 기타

(가) 경쟁제한적 법령과 관련되는 조정(제63조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이 경쟁 제한 사항(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 참가·사업 활동

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나) 경쟁제한적 행정처분과 관련되는 조정(제63조 제1항,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자·사업자 단체에 대해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처분을 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나. 조사·처분

(1) 조사등의 절차(제10장)

(가) 개관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법위반 단서가 포착되면 관련국이나 관할 지방사무소는 당해 사건의 심사에 착수한다. 사건심사는 관련서류에 대한 조사, 당사자들의 진술청취,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청취, 법적 검토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가 주어지며, 취득된 업무상 비밀도 철저히 보호된다. 심사관(담당 국장 또는 지방사무소장)은 심사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나) 위반행위의 단서(제4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에 의해 필요한 조사를 행할 수 있다(제49조 제1항).

또한, 누구든지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동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조사의 결과, 시정 조치 명령등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에 의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동 제3항).

(다) 위반행위의 조사(제50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i)당사자, 이해관계인 혹은 참고인의 출두 또는 의견의 청취, (ii)감정인의 지정 또는 감정의 위촉, (iii)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러한 임직원에게 대해, 원가 혹은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그 외 필요한 자료 혹은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 혹은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제50조 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사무소 혹은 사업장에 들어가게 하여 업무 혹은 경영 상황, 장부, 서류, 전산 자료, 음성 녹음 자료, 화상 자료, 그 외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시킬 수 있고,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시킬 수 있다(동 제2항).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이러한 임직원에게 대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 혹은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 혹은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동 제3항). 이 조사를 실시할 때,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관계인에 제시해야 한다(동 제4항).

(2) 심결절차

(가) 심결절차의 진행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들은 제출된 심사보고서와 피심인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피심인들에게는 심판일시 및 장소 등이 통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납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제52조). 심판정에서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의 의견진술, 피심인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절차,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피심인은 이 과정에서 직접 또는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당해 사건의 범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범위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의결서의 형태로 작성되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송부된다.



(나) 심결 : 배제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는 시정 명령과 시정 권고가 있다.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각각의 조문에서 배제조치의 내

용이 규정되어 있다(제5조, 제16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제34조).

유형(금지규정)	배제조치규정	배제조치의 내용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3조의2)	제5조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기업 결합의 제한, 지주회사의 행위의 제한등 (제7조, 제8조의 2, 제8조의 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 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위반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채무보증의 취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 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부당한 공동 행위(제19조)	제21조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불공정거래행위 (제23조)	제24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제26조)	제27조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29조)	제31조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부당한 국제계약 (제32조)	제34조	계약의 취소, 계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그 외 시

	정에 필요한 조치
--	-----------

또한, 공정거래 위원회는 관계인에 대해, 시정 조치안을 정해 이것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시정 권고」). 권고를 받은 자는, 승낙의 유무를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관계인이 시정권고에 승낙했을 때에는 시정 명령이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제51조).

(다) 심결 : 과징금의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계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및 금액 산정에는 재량이 허용되고 있다. 과징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제55조의 3).

- (i)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 (iii)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유형	과징금의 상한액	근거규정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제3조의 2)	해당 사업자의 직전의 3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평균총매상액(이하 단지 「매상액」이라고 한다.)의 3%(매상액이 없을 때, 매상액의 산정이 곤란한 때(이하 「매상액이 없는 경우등」이라고 한다.) (은)는 10억원)	제6조
상호 출자의 금지 위반 (제9조) 출자 총액의 제한 위반	위반행위에 의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 가격의 10%	제17조 제1항

<p>(제10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 증의 금지 위반 (제10조의 2)</p>	<p>위반 채무 보증액의 10%</p>	<p>제17조 제2항</p>
<p>지주회사등의 행위의 제 한 위반 (제8조의 2)</p>	<p>다음의 금액의 10% (i)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했을 경우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자 본 총액을 초과하는 부채 액 (ii)자회사의 주식을 50% 미만(자회사가 상장 법인, 협회 등록법인 또는 공동 출자 법인인 경우는 30% 미만, 벤처 지주회사의 경 우에는 20% 미만) 보유했을 경우 자회사의 주식의 기 준대차대조표상의 장부 가격×(0.5 또는 0.3 또는 0.2-자회사의 소유주식 비율)÷자회사의 소유주식 비율 (iii)지주회사등의 그 외의 제한 위반의 경우 소유하 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 표상의 장부가격의 합계 액 (iv)일반 지주회사의 자회 사가 사업관련 손자회사 의 주식을 50% 미만(손자 회사가 상장법인, 협회 등 등록법인 또는 공동출자 법 인인 경우는 30%미만) 보유했을 경우 손자회사 의 기준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격×(0.5 또는 0.3- 손자회사의 주식 소유 비</p>	<p>제17조 제4항</p>

	율)÷손자회사의 주식 소유 비율	
부당한 공동 행위 (제19조)	대상액의 10%(대상액이 없는 경우 등은 20억원)	제22조
불공정거래행위 (제23조)	대상액의 2% (부당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5%) (대상액이 없는 경우 등은 5억원)	제24조의2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제26조)	<대사업자 단체> 5억원	제28조 제1항
	<대참가사업자> 대상액의 5%(대상액이 없는 경우 등은 5억원)	제28조 제2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29조)	대상액의 2%(대상액이 없는 경우 등은 5억원)	제31조의2
국제계약체결 제한 위반	<대사업자 단체> 5억원 <대사업자> 대상액의 2%(대상액이 없는 경우 등은 5억원)	제34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시정권고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의 제기를 할 수 있다(제53조 제1항).

(라) 기왕의 행위에 대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했을 때에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의 납부 등을 명할 수 없다(제49조 제4항).

다. 신고자에 대한 조치감면제도(제22조의 2, 시행령 제 35조)

(1) 서

공정거래위원회는 (i)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ii) 증거의

제공 등에 의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법 제22조의2 제1항).

(2) 감면 대상자

감면은 최초의 2명의 신청자에만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것에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100% 면제한다. 2번째의 신청자에게는 과징금을 30%면제한다(시정조치의 면제는 없다). 3번째 이후의 신청부터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감면 절차

감면의 신청은 증거와 함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한다. 증거의 수집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카르텔행위의 개요를 적은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의 15일 이내(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75일 이내)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이 경우, 15일간은 해당 신청자의 지위는 보관 유지된다.

복수의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순위는 신청서가 수리된 일자·시간에 의해 판단된다. 구두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오디오 테잎 또는 비디오 테잎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여, 기록된 일시에 의해 판단된다. 만일, 수인이 공동으로 서명하고, 1개의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감면은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제3자에 의한 신고가 이미 된 후에 당사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도, 제3자에 의해서 제출된 증거에서는 사건이 완전하게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첫번째의 신청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면신청을 수리하고 나서 15일 이내에 감면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감면의 적격자가 되면, (i) 심사에 계속적으로 협력을 행할 것, (ii) 제출한 증거가 허위గా 아닐 것, (iii) 위법행위와의 관여를 종료할 것을 조건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가 발급된다.

(4) 감면 플러스

카르텔에의 관여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제일 처음에 그 외의 카르텔에 대한 신고 또는 정보 제공을 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해당 카르텔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제, 그리고 최초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과징금의 감액 및 시정 조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큰 카르텔에 있어서의 과징금의 면제를 목적으로 하여, 작은 카르텔을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의 카르텔의 감액율은 다음의 카르텔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다.

	최초의 카르텔 감액률	기타 카르텔감액률
B가 A보다 적다	20%	100%면제
B가 A의 1-2배	30%	100%면제
B가 A의 2-4배	50%	100%면제
B가 A의 4배 이상	100% 면제	100%면제

주) A : 심사 중의 카르텔의 관련 매상고(전체 카르텔 참가 기업의 관련 매상고)

B : 그 외의 카르텔의 관련 매상고(전체 카르텔 참가 기업의 관련 매상고)
기타

감면신청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는 신청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신청자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은 있다.

감면의 적격자가 되지 않더라도, 카르텔에 참가한 것을 부정하지 않고 심사에 협력하면 최대 15%까지의 과징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9월 5일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감면제도와 관련된 지침」을 공표하였다. 동 지침에 정해져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했는지의 판단기준(제2조)

- 신고(조사개시 전의 정보제공·협력) 및 조사협조(조사개시 후의 정보 제공·협력)의 순위의 판단기준(제3조)

- 증거제출의 방법(제4조)

- 조치감면의 정도(제5조)…기본적으로, 아래(참고) 중 B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과징금 모두 면제, C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경감·과징금 면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감액을 50%이상 100%미만의 과징금의 감액은 실제로는 행해지지 않게 된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제6조)…단순한 참가의 제안·종용은 「강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형사소추의 면제(제7조)…아래(참고) 중 B 또는 C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는 검찰청에 의한 기소를 받지 않는다.

-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비밀의 확보(제8조)…시정조치가 완전하게 면제되는 신고자등의 명칭을 결정 통지 등의 문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가명을 기재하는 것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보상금(상한 1억원)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2조의 2).

라. 분쟁조정제도의 도입(법 제48조의2 내지 제48조의9 신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 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2007년 8월 법개정을 통하여 분쟁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제48조의2)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제48조의3).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에 관하여는 동법 제48조의6(조정 신청), 제48조의7(조정 등) 및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제도의 도입은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를 통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대한 불복절차

가. 이의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으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 2항).

나. 심결취소청구소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결서의 원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것을 제기해야 한다(제54조 제1항). 해당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제55조).

5. 법원에 의한 집행절차

가. 형사처벌

(1) 벌칙의 정도

공정거래법의 주된 실체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이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이 외, 제68조 및 제69조에 절차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정해져 있다). 덧붙여 회사의 대표자,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등이 업무에 관해서 제66조에서 제6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등에 대해서도, 각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양벌규정, 제70조).

위반행위유형(주된 것)	벌칙	근거규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제3조의 2) 기업 결합 제한 위반(제7조 제1항·제3항) 지주회사의 행위의 제한위반(제8조의 2 제2항~제4항) 상호 출자의 금지위반(제9조) 채무보증 제한위반(제10조 제1항)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위반(제10조의2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 제1항)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경쟁제한행위)(제26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또는 이러한 병과	제66조
불공정거래행위(제23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1호 위반 이외)(제26조 제1항 제2호~ 제5호) 재판매가격유지행위(제29조 제1항)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32조 제1항) 시정조치의 불실행(제5조 등)	2년 이하의 징역 ;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7조

(2) 고발

공정거래법 제66조 및 제67조의 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속고발, 제71조 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66조 및 제67조의 죄 가운데,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분명하게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의무를 지우고 나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동조 3항).

나. 손해배상청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위반행위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던 것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56조). 공정거래사건의 경우 손해액 입증이 힘들어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법원에 의한 손해액 인정을 하고 있다(제57조). 손해의 발생은 확실하나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체취지와 증거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동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정조치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법 제57조 제1항, 제2항).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사인에 의한 금지처분제도는 아직 도입되고 있지 않다.

VII. 결론

이상 아시아 각국 즉 일본,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및 한국의 경쟁절차법을 개관하였다. 경쟁법이 미국의 반독점법(Antitrust Law)에서 연원하는 만큼 각 법제간의 유사점이 많으나 한편 각국의 기본적 법체계와 경쟁법 수용의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필요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른 1947년 경쟁법을 도입하였다. 점진적 제도의 개선을 거쳐 公正取引委員會의 권한이 강화되고 법원에 의한 민사적 구제도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금지청구소송도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형사처벌은 위원회가 고발권을 행사하여야 비로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한 미미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이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볼 때 경쟁법의 집행을 제도적으로나 실제 운용에서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할 것이다.

싱가폴의 경쟁법은 2005년에야 비로소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의외이다. 싱가포르의 성장우선정책, 도시국가로서의 특성 등의 이유로 경쟁법이 뒤늦게 도입되었으나 그만큼 제도적으로는 정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위원회의 배제명령이나 과징금부과처분 이전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고, 경쟁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민사적 구제에 있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모두 경쟁위원회 등 위반결정이 확정된 뒤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행정적 집행이 우위에 있어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

대만의 공평교역법은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보다는 10년 이상이 빠른 1992년에 제정, 시행되었다. 대만의 공평교역법은 초기 입법시부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거의 완비된 법제를 마련하였다. 공평교역위원회는 경쟁법의 집행에 앞서 또는 그 집행에 즈음하여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위원회를 경유한 행정원의 재심과 사법부의 일부인 행정법원에의 제소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한 집행절차 외에도 형사벌과 민사적 구제절차가 갖추어져 있다. 민사적 구제절차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미국의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은 2000년에야 도입되었으나 독일법제에 따라 비교적 정치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집행 명령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기간이나 법원 등의 판결기간 등이 지나치게 짧게 법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제도적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민사적 구제 절차가 배제되고 있는 점은 개선을 요한다 하겠다.

한국은 맥아더 정부에 의한 타율적 입법을 한 일본을 제외하고는 매우 빠른 1980년에 경쟁법이 제정되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정력의 인정으로 신속한 집행력 또한 확보되고 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서울고등법원에의 제소, 대법원에의 상소 등의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다. 다만 민사적 구제절차 중 공정위의 처분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청구제도가 최근에는 도입되었고 위법행위금지청구제도는 아직도 도입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타 아시아국가에 비하여 우리 입법의 후진성을 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 경쟁법에 관한 각국제도와 집행방법을 검토하여 볼 때 아시아 각국의 경쟁법집행제도의 조화와 통일은 비교적 용이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경쟁절차법의 조화와 통일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우선 (i) 각국의 제도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고 (ii) 제도상의 공통점을 추출하여 조화와 통일을 위한 작업을 선행하며 (iii) 제도상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조화와 통일이 가능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고 (iv) 제도상의 차이점 중 조화와 통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v) 제도뿐 아니라 실제 운영상의 조화와 통일 방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경쟁법의 발전을 예의 주시하면서 중국의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하여 아시아 경쟁법의 조화와 통일 작업에 중국을 참여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

제2부

A Comparative Study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Asia

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Japan

1. Introduction

In Japan, the Antimonopoly Act(official name: Act concerning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was enacted in July 1947 as a part of measures to establish the economic foundation for supporting democratic society. It aims to contribute toward the democratic society. It aims to contribute toward the democratic and sou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and the securement of consumer benefits by promo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through the prohibition of improper trade restriction(such as cartels and bid rigging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addition to the Antimonopoly Act, policies for promoting competition have been improved steadily through the enforcement of complementary laws, such as the Subcontract Act enacted in July 1956 and the Premiums and Representations Act enacted in August 1962. The Antimonopoly Act has also been strengthened and amended repeatedly according to changes in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 from the post-war high economic growth period until today. Its recent amendment made in April 2005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a Leniency Program and criminal investigation powers etc.

In order to administer and enforce the Antimonopoly Act and its related laws, the JFTC has been established. the JFTC always supervises the movements of the market, economy and business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or detect acts against the Antimonopoly Act, and strictly regulates

and takes measures against illegal acts, if any.

2. Structure and Authority of JFTC

a. Structure of JFTC

The JFTC administratively attached to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lthough the JFTC performs its authority independently(Arts. 27 & 28).

The JFTC is consisted of a chairman and four commissioners. The chairman and the commissioners ar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with the consent of both Houses of the Diet(Art. 29). The term of office of the chairman and the commissions is five years(Art. 30).

b. Authority of JFTC

The JFTC takes in charge of the following affairs:

- (i)Matters relating to regulation on private monopolization;
- (ii)Matters relating to regulation o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 (iii)Matters relating to regulation on unfair trade practices;
- (iv)Matters relating to regulation pertaining to monopolistic situations;
- (v)Matters relating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pertaining to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FTC and
- (vi) Affairs which are assigned to the JFTC pursuant to other laws(Art. 27-2).

3. JFTC's Enforcement Procedure

a.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Any acts to monopolize the market are prohibited. Th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under the control of only a few entrepreneurs makes

it difficult for competition to function effectively.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various regulations to acts intended to monopolize the market and maintain oligopolistic situations by undue means.

-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 Measures against monopolistic situations

Any entrepreneurs are prohibited from restraining competition in conjunction with other entrepreneurs.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entrepreneurs execute agreements for product prices and volumes in order to protect mutual interests, thus voluntarily restraining market competition. The Antimonopoly Act prohibits any artificial competition-restricting acts such as cartels and bid riggings.

- Prohibition of cartels
- Prohibition of bid riggings
- Prohibition of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artels
- Restraint of activities by trade associations

Any acts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in a market are prohibit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market, it is necessary for entrepreneurs to engage in fair competition in an effort to offer products, which are better in quality and lower in prices than those of their competitors. For this purpose, the Antimonopoly Act designates the acts restraining free competition and undermining the foundation for competition as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hibits such acts. "Unfair trade practices" consist of "general designation" applicable to the entire category of business and "Special designation" applicable only to specific category of business.

- Refusal to deal

- Discriminatory pricing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 Unfair low price sales
- Deceptive customer inducement
- Unjust high price purchasing
- Tie-in sales

The following acts are prohibited.

- (i) Abuse of dominant bargaining position
- (ii) Resale price restriction
- (iii) Dealing on exclusive terms
- (iv) Dealing on restrictive terms
- (v) Interference with competitor' transactions
- (vi) Interference with internal operations of competitors

b. Power of Investigation

The JFTC has issued the Rules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by the JFTC as amended by JFTC Rule No. 5 of 2005.

The JFTC may make the following measures:

- (i) Ordering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witnesses to appear to be interrogated, or collecting their opinions or reports;
- (ii) Ordering expert witnesses to appear to give expert opinions;
- (iii) Ordering persons holding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o submit such materials, or keeping such submitted materials at the JFTC; and
- (iv) Entering any business office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other necessary sites, and inspecting conditions of business operation and property,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JFTC may order its investigators to make these measures(Art. 47). The J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order relevant persons or organizations to appear before the JFTC, or require them to submit necessary reports, information or materials.

The J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commission relevant persons, with the relevant knowledge and experience, or others to carry out necessary research and surveys(Arts. 40, 41). The J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hold public hearings to obtain the opinions of the public(Art. 42).

c. Issuance of Cease and Desist Order

If there exists any act of monopolization o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e JFTC may order the relevant entrepreneur to cease and desist from the acts, to transfer a part of his business,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such acts in violation(Art. 7).

The cease and desist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cease and desist order shall indicate the measures necessary to eliminate the violation or to ensure that the violation is eliminated, and the facts found by the JFTC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Art. 49II)

The JFTC, where it intends to issue a cease and desist order, gives in advance to a person who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said cease and desist order an opportunity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s and to submit evidences(Art. 49III).

4. Issuance of Payment Order

If an any entrepreneur effect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enters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e JFTC may order the entrepreneur, to pay a surcharge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sales amount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Art. 7-2).

The payment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payment order for surcharge shall state the amount of the surcharge to be paid, the basis of calculation of such amount, the violation pertaining to such surcharge, and the deadline for payment(Art. 50).

5. Appeals against JFTC's Order

a. Appeals before JFTC

Any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cease and desist order or the payment order of the JFTC may request, within six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transcript of the written cease and desist order was served, the JFTC to initiate a hearing regarding the said cease and desist order(Art. 49 VI & 50IV).

The JFTC may suspend the execution of all or part a cease and desist order or a payment order, when it find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in the case where a hearing is request pertaining to the cease and desist order. If the JFTC deems the suspension of the said execution to be likely to be likely make it difficult to ensure competition in the market or otherwise deems it necessary, rescind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Art. 54 & Art. 79-2).

b. Hearing Procedure

All hearings shall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however, that hearings

may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re found necessary to protect trade secrets of an entrepreneur, or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Art. 61).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by which the JFTC, in the course of hearings, interrogates witnesses, or order expert witnesses to express expert opinion(Art. 62).

The JFTC must, if the hearing request has sufficient grounds, rescind or modify the entirety or a part of the original order by a decision after the hearing procedures have been completed(Art. 66III).

c. Consent Order

If the respondent admits the facts and the application of the law as stated in the decision of commencement of the hearing, and offers in writing to accept the decision without requiring subsequent hearing procedures and submits to the JFTC a written plan setting forth concrete measures which the respondent proposes voluntarily to take in order to restore competition with respect to the goods or services involved in the monopolistic situation, the JFTC may render a decision to the effect of the concrete measures stated in such plan without conducting the subsequent hearing procedures(Art. 65).

By introducing the consent order system, the previous systems of recommendation decision or correction recommendation are abolished.

d. Appeals to the Court

A person who is not satisfied the decision of the JFTC may file a lawsuit to rescind the deci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became effective(Art. 77).

The court may rescind the decision of the JFTC if the decis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i) If the facts on which the decision is based are not established by substantial evidences, or
- (ii) If the decision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or regulations(Art. 82).

6. Enforcement in the Courts

a. Criminal Solutions

Any person who has effected private monopolization o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has effected substantial restraint of competition in any particular field of trade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or by a fine(Arts. 89-92).

b. Civil Remedies

A person whose interests are infringed or likely to be infringed by an act in viol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Antimonopoly Act and who is thereby suffering or likely to suffer extreme damages is entitled to seek the suspension or prevention of such infringements from an entrepreneur or a trade association that infringes or is likely to infringe such interests(Art. 24).

A person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 entrepreneur or trade association that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Antimonopoly Act may file a lawsuit(Art. 25).

I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Singapore

1. Introduction

In Singapore, competition law system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by enactment of Competition Act(Chapter 50B) as of January 1, 2005. Th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MTI") has initiated the legislative work from February 2003. The Competition Act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on October 19, 2004 and has come force from January 2005.

The Competition Act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llowing three phases:

Phase 1: Only the provisions establishing the Competition Commission of Singapore("CCS")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5.

Phase 2: The provisions regarding anti-competitive agreements, decisions and practices, abuse of dominance, enforcement, appeal procedures, and other miscellaneous areas have come into force as of January 1, 2006.

Phase 3: The remaining provisions pertaining to mergers and acquisitions came into force as of July 1, 2007.

The phased approach allowed time for the CCS and for businesses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and Compliance with the new legislation.

2. Structure and Authority of CCS

a. Structure of CCS

The governmental agency which administer and enforce the Competition Act is the CCS. The role of the CCS is to promote healthy competitive markets that will benefit the Singapore economy.

The CCS is composed of one chairmen and Commission Members between two and sixteen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the MTI.¹⁸⁾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 is three to five years as determine by the MTI. As to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the CCS.

The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Group establishes the policy framework and guidelines in implementing the Competition Act; undertake economic analysis and conduct market studies; and investigate and evaluate the economic merits of competition cases.

The Legal and Enforcement Group will work with the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Group and ensure that the overall system to be put in place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legal framework under the Act. The Legal and Enforcement Group will undertake legal analyses, review and prepare all the legal documentation needed in the course of the work of the CCS; and represent the CCS in appeal and legal cases. In addition, the Legal and Enforcement Group will take the lead to educate the business community on the competition law regime and liaise with other sectoral regulators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authorities on co-operation arrangements.

b. Authority of CCS

18) §5 of the Competition Act.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CCS are:

- (i) maintain and enhance efficient market conduct and promote overall productivity,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of markets in Singapore;
- (ii) eliminate or control practices having adverse effect on competition in Singapore;
- (iii) promote and sustain competition in markets in Singapore;
- (iv) promote a strong competitive culture and environment throughout the economy in Singapore;
- (v) act internationally as the national body representative of Singapore in respect of competition matters; and
- (vi) advise the Government or other public authority on national needs and policies in respect of competition matters generally.

The CCS will have powers to investigate and adjudicate anti-competitive activities. It will also have the powers to impose sanctions.

3. CCS's Enforcement Procedure

a.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1) §34 Prohibition: Agreements, etc.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Agreements, decisions and concerted practices that appreciably prevent, restrict or distort competition in Singapore are prohibited. These include agreements between competing firms to fix prices, fix tender bids, reduce the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sold, or to share markets.

The provisions of any agreement that infringe this prohibition will be rendered void on or after 1 January 2006, to the extent of the

infringement.

(2) §47 Prohibit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Firms are prohibited from abusing their market dominance in ways that are anti-competitive and which work against longer-term economic efficiencies. The section does not prohibit firms from having a dominant position or striving to achieve it. Firms can and should seek to improve or maintain their market positions through offering more competitive pricing, better quality or a wider range of goods or services. But they must not abuse their market dominance.

(3) §54 Prohibition: Mergers

Being a small open economy, highly concentrated markets with only a few major market players are at times inevitable. Thus only mergers and acquisitions(M&A) which substantially lessen competition in a market in Singapore are prohibited. This prohibition has come into force as of July 1, 2007.

(4) Exclusions

As the intent of the statute is to regulate the conduct of business, it does not apply to any activity, agreement or conduct of Government, a statutory board or any person acting on their behalf. Sectors or activities for which there are specialized competition framework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and energy sectors are also excluded. Activities like the supply of scheduled bus services and rail service are excluded because of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b. Issuance of Guideline by CCS

In June, 2007, the CCS published the Guidelines on Enforcement indicating the manner in which it will interpret and administer the provisions of the Competition Act. The guidelines outline the conceptual, analytical and procedural approach that the CCS will take in its enforcement activities. The assessment of a particular case and its outcome will depend on its specific facts and circumstances.

The CCS has conducted public consultation exercises before publishing its Guidelines. The Guidelines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The §34 prohibition - Agreements, etc. preventing, restricting or distorting competition
2. §47 Prohibition: Abuse of dominant position
3. Market definition
4. Powers of investigation
5. Enforcement
6. Lenient treatment for undertakings coming forward with information on cartel activity cases
7. Filing notifications for guidance or decision
8. Transitional arrangements
9.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0. The §54 prohibition - Mergers

In 2005, the CCS issues the CCS Guidelines on:

- The Major Provisions(Summary Guideline)
- The Section 34 Prohibition
- The Section 47 Prohibition
- Market Definition

- The Powers Of Investigation
- Enforcement
- Lenient Treatment for Undertakings Coming Forward With Information On Cartel Activity Cases
- Filing Notifications for Guidance or Decision
- Transitional Arrangements
- The Trea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 Power of Investigation

As to the investigation procedure, the CCS issued the Guidelines on Powers of Investigation. The CCS has the powers (i) to require the production of documents and information, (ii) to enter premises for inspection, (iii) to enter premises with or without warrant.

d. Directions to Bring an Infringement to an End

Where the CCS has made a decision that the sections 34 and/or 47 prohibitions has or have been infringed, the CCS may give such direction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o bring an infringement to an end.

The directions may be given to such person(s) as the CCS considers appropriate. This includes individuals and undertakings. The CCS is not limited to giving directions to the infringing parties. For example, directions may be addressed to a parent company which, though not the actual instigator of the infringement, has a subsidiary which is the immediate party to the infringement.

Directions may in particular require the person concerned to modify the

agreement or conduct, or to terminate the agreement or cease the conduct in question. Directions may require positive action, such as informing third parties that an infringement has been brought to an end and reporting back periodically to the CCS on certain matters. In some circumstances, the directions appropriate to bring an infringement to an end may be (or include) directions requiring an undertaking to make structural changes to its business.

As to Procedure for giving directions, the directions must be in writing and may be given to such person(s) as the CCS considers appropriate. They are likely to form part of the infringement decision in cases where the decision and the directions are addressed to the same person. If the CCS proposes to make an infringement decision, it must give the person likely to be affected by such decision, a written notice setting out the facts on which the CCS relies and its reasons for the proposed decision. Such person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to the CCS. The person receiving the written notice may request in his written representations a meeting with the CCS to make oral representations to elaborate on the written representations already made in this regard.

The CCS will give these persons or their authorised representatives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spect the documents in the CCS' file relating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the notice. The CCS may withhold any documents to the extent that they co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re internal documents.

Any direction given by the CCS will set out its reasons for giving the direction. The direction will be published on the register maintained by the CCS, which is open to public inspection on the CCS' website.

As to Enforcement of directions, directions will take immediate effect, in most cases. However, in some cases, the CCS may allow the undertaking a period of time within which to comply with a direction.

If there is non-compliance with a direction, the CCS may apply to register the direction with a Distric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urt (Chapter 322, Rule 5). On registration, the direction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it had been an order originally obtained in the District Court and will be enforced accordingly. Any person who fails to comply with a registered direction without reasonable excuse will be in contempt of court. The normal sanctions for contempt of court will apply, i.e., the court may impose a fine or imprisonment. The Court may also make orders to secure compliance with the direction, or to require any person to do anything to remedy, mitigate or eliminate any effects arising from non-compliance with the direction. In addition, the District Court may also make an award for costs upon the registration of the direction.

e.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The CCS may give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pending its final decision as to whether there has been an infringement of the §34 or 47 prohibition.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will not affect the final decision.

The CCS may give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before it has completed its investigation of the suspected infringement if:

- it has begun an investigation under section 62 of the Act,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and it has not completed the investigation; and
- it considers that it is necessary to act urgently either to prevent serious, irreparable damage to a particular person or category of persons, or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What constitutes serious damage is a question of fact and will depend up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Damage may be serious where a particular person or category of persons may suffer considerable competitive disadvantage likely to have a lasting effect on their position. Serious damage is likely to include significant financial loss to a person (to be assessed with reference to that person's size or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the proportion of the loss in relation to the person's total revenue), and significant damage to the goodwill or reputation of a person.

A threat of insolvency will generally be sufficient to constitute serious, irreparable damage although it need not always be so. Less extreme forms of serious damage may still be irreparable, in so far as they cannot be remedied by later intervention. Serious and irreparable damage are cumulative, though inter-related, requirements. Thus, serious damage which is not irreparable will not suffice. The serious, irreparable damage

must be shown to result from the alleged anti-competitive behaviour.

The CCS may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act urgently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for example, to prevent damage being caused to a particular industry or to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suspected infringement. It may also take action to prevent damage to competition more generally.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may be given by the CCS on its own initiative or after receiving a request, provided that the tests in paragraph 3.2 above are satisfied. Any person requesting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should provide as much evidence as possible, demonstrating that the alleged infringement is causing, or is likely to cause, serious, irreparable damage or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 CCS act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Such a request should also indicate as precisely as possible the nature of the interim measure sought.

The CCS may give such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The CCS may in particular require the person(s) concerned to terminate the agreement or cease the conduct in question, or to modify the agreement or conduct.

When the investigation is complete and the CCS has decided that an infringement has taken place, it may replace the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with a direction described in Part 2 above. Otherwise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has effect until the CCS has discontinued or completed its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 or until the CCS considers

there is no longer any necessity to act as a matter of urgency to prevent any serious, irreparable damage to a particular person or category of persons or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As to Procedure on giving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the CCS must give written notice to the person to whom it proposes to give the direction, indicating the nature of the direction it proposes to give and the reasons for deciding to give it, before giving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Such person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written representations to the CCS. The person receiving the written notice may request in his written representations a meeting with the CCS to make oral representations to elaborate on the written representations already made in this regard.

The person who receives written notice from the CCS about the proposed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may inspect the CCC' file on the case. The CCS will give such a person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inspect the documents in the CCS' file relating to the proposed direction. However, the CCS may withhold any documents to the extent that they con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re internal documents.

The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will be published on the register maintained by the CCS, which is open to public inspection on the CCS' website.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can be appealed to the Board. Such an

appeal must be brough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The making of an appeal will not suspend the effect of the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but the Board may suspend its effect by an interim order.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can be enforced following the procedure set out for enforcement of Directions as explained above.

In lieu of interim measures directions, assurances by undertakings can be used. The CCS may accept informal interim assurances offered by the person(s) concerned where it is satisfied that these will prevent any harm which might otherwise form the basis for imposition of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One of the prerequisites for an interim remedy is that it is necessary to act as a matter of urgency. The ability to accept informal interim assurance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helps facilitate quick action by the CCS. The CCS may replace informal interim assurances by a direction on interim measures. Informal interim assurances will include a provision that they will come to an end when an investigation is complete. If the CCS has decided that an infringement has taken place, it may replace any informal interim assurances with a direction.

4. Imposition of Penalties

a. CCS's Power to Impose Financial Penalty

The CCS may impose a financial penalty on any party to an agreement that infringes the section 34 prohibition or any person whose conduct infringes the section 47 prohibition provided that infringement has been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committed on or after 1 January 2006. The amount of penalty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n the Appropriate Amount of Penalty.

The amount may be up to 10 per cent of the turnover of the business of the undertaking in Singapore for each year of infringement, up to a maximum of 3 years. It is for the CCS to determine whether a financial penalty should be imposed. The CCS can impose penalties for infringements that have already stopped as well as for ongoing infringements.

The CCS will use this power to impose penalties on infringing undertakings to reflect the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and to serve as an effective deterrent, both to the undertaking concerned and to other undertakings which might be considering activities contrary to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The setting of the maximum penalty at 10% of the turnover of the business of the undertaking in Singapore for each year of infringement, up to a maximum of 3 years, allows the CCS to adjust, where appropriate, the levels of penalties to ensure that deterrence is achieved.

b. Intentional or Negligent Commitment

Before exercising the power to impose a financial penalty, the CCS must be satisfied, as a threshold condition, that the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For intention or negligence to be found, it is not necessary for there to have been action by, or even knowledge on the part of, the partners or

principal managers of the undertaking concerned; action by a person who can act on behalf of the undertaking suffices.

The CCS may consider the existence of past decisions or directions made against an undertaking when considering whether or not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by similar anti-competitive activities of that undertaking was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 fact that a particular type of agreement or conduct has not previously been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does not mean that the infringement cannot be commit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CCS might find that an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include the following:

- . the agreement or conduct has as its object the restriction of competition;
- . the undertaking in question is aware that its actions will be, or are reasonably likely to be, restrictive of competition but still wants, or is prepared, to carry them out; or
- . the undertaking could not have been unaware that its agreement or conduct would have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even if it did not know that it would infringe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The intention (or negligence, referred to below) relates to the facts, not the law. Ignorance or a mistake of law (i.e. ignorance that the relevant agreement or conduct is an infringement) is thus no bar to a finding of

intentional infringement.

In establishing whether or not there is intention, the CCS may consider internal documents generated by the undertakings in question. The CCS may regard deliberate concealment of an agreement or practice by the parties as strong evidence of an intentional infringement. It may be inferred that an infringement has been committed intentionally where consequences giving rise to an infringement are plainly foreseeable from the pursuit of a particular policy by an undertaking.

The CCS is likely to find that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has been committed negligently where an undertaking ought to have known that its agreement or conduct would result in a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Where an undertaking participates in an infringement under pressure, it may still be held to have act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although,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penalty may be reduced.

c. Payment of Penalty

(1) Amount of Penalty

The CCS's approach on the calculation of a financial penalty to be imposed will be set out in the CCS Guidelines on the Appropriate Amount of Penalty.

In brief, a financial penalty imposed by the CCS for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will be calculated taking into

consideration, amongst other things, the nature, duration and seriousness of the infringement, the turnover of the business of the undertaking in Singapore for the relevant product and geographic markets affected by the infringement, market conditions, aggravating factors including the existence of any prior anti-competitive practices and behaviour of the infringing party, and mitigating factors including the existence of any compliance programm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infringing party has co-operated with the CCS.

(2) Lenient Treatment for Undertakings Coming Forward with Information

Undertakings participating in cartel activities might wish to terminate their involvement and inform the CCS of the existence of the cartel activity, but be deterred from doing so by the risk of incurring large financial penalties. To encourage such undertakings to come forward the CCS will grant total immunity from financial penalties for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prohibition to a participant in a cartel activity who is the first to come forwar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being met (including that the undertaking refrain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the cartel activity, except as directed by the CCS). An undertaking which is not the first to come forward, or does not satisfy all of these conditions, may benefit from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the penalty imposed.

Further information on immunity from, or reduction in the amount of financial penalties is set out in the CCS Guidelines on Lenient Treatment for Undertakings Coming Forward with Information in Cartel Activity Cases.

(3) Payment

Where the CCS requires an undertaking to pay a financial penalty, it must, at the same time, inform the undertaking in writing of its reasons. Where the CCS imposes a penalty, it must serve a written notice on the undertaking required to pay the penalty, specifying the date before which the penalty is required to be paid. The date for payment must not be earlier than the end of the period within which an appeal against the notice may be brought.

(4) Liability for Payment

The CCS may require:

- . any party to an agreement which has infringed the section 34 prohibition; and/or
- . any person whose conduct has infringed the section 47 prohibition;

to pay a penalty. Where there has been a finding of joint dominance, so that more than one undertaking has infringed the section 47 prohibition, the CCS can require each undertaking to pay a penalty.

A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will usually be treated as a single undertaking if they operate as a single economic unit. This will depend on the facts of each case. The CCS may need to consider the respective responsibility of both parent and subsidiary for an infringement and therefore for consequent liability to pay a penalty. Where the CCS decides to impose a penalty on both parent and subsidiary, it may be imposed jointly and severally.

A penalty may be imposed on a company that takes over the undertaking that has committed an infringement. Changes in the legal identity of an undertaking will not prevent it or its component parts from being penalised. As far as possible, liability for penalties will follow responsibility for actions. Thus, a subsequent transfer of a business from one economically distinct undertaking to another will not automatically absolve the transferor from responsibility. Where the original undertaking has ceased to exist by the time a penalty comes to be imposed, the penalty may be imposed on the successor undertaking.

The involvement of a trade association in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may result in financial penalties being imposed on the association itself, its members or both. Where the infringement relates to activities of its members, the penalty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sum of the turnover of business of each member of the trade association in Singapore active on the market affected by the infringement, for each year of infringement, up to a maximum of 3 years.

(5) Enforcement of Penalty Decision

If an undertaking fails to pay a penalty within the date specified in the direction and it has not brought an appeal against the imposition or amount of the penalty within the time allowed or such an appeal has been made and the penalty upheld, the CCS may register the direction to pay a penalty with a District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Court and the effect of registration is that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as if it had been an order originally obtained in the District Court and can be executed and enforced

accordingly, for example, by writ of seizure and sale. In addition, the District Court may make an award for costs and interest upon the registration of the imposition of the penalty.

5. Appeal against Directions

a. Appeals against Directions

A direction imposed can be appealed to the Competition Appeal Board ("CAB"). Such an appeal must be brough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The CAB can impose, revoke or vary a direction as long as it is a direction that the CCS could itself have given. A decision by the CAB as to any direction can be appealed to the High Court and then to the Court of Appeal on a point of law arising therefrom¹¹. Such an appeal can only be made by a party to the proceedings in which the decision of the CAB was made.

An appeal to the CAB against a direction imposed will not operate to suspend that direction. The infringement decision and the direction will remain in effect (unless suspended by an interim order made by the CAB or, in the case of a further appeal, the relevant appeal court).

b. Appeals against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Directions on interim measures can be appealed following the procedure set out for enforcement of Directions as explained above.

c. Appeals against Penalty Decision

The decision to impose a financial penalty and the decision as to the amount of that penalty can be appealed to the CAB. Such an appeal must be brought within the specified time period.

The CAB can revoke a penalty or vary its amount. A decision by the CAB as to the amount of a penalty can be appealed to the High Court and then to the Court of Appeal. Such an appeal can only be made by a party to the proceedings in which the decision of the Board was made.

An appeal to the CAB against the imposition or amount of a penalty will suspend the penalty until the appeal is determined. The infringement decision itself will remain in effect (unless suspended by an interim order made by the CAB or, in the case of a further appeal, the relevant appeal court).

6. Enforcement in the Courts

Parties suffering loss or damage directly arising from an infringement of the section 34 or 47 prohibition are entitled to commence a civil action against the infringing undertaking seeking relief.

Such rights of private action shall only arise after the CCS has made a decision of infringement in respect thereof, and in the event the decision is subject to an appeal, upon expiry of the appeal period or upon determination of the appeal if an appeal is brought.

There is a 2 year limit for the taking of such private actions from the time that the CCS made the decision or from the determination of the

appeal, whichever is the later.

The court will be bound in such proceedings by the relevant infringement decisions.

II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aiwan

1. Introduction

In Taiwan, the Fair Trade Act("FTA") was enacted in February 1991 and came into force as of February 1992. The objectives of the FTA are to maintain trade order; protect consumer interests; ensure fair competition; and promote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national economy. The FTA covers a wide range of antitrust as well as unfair competition concerns.

In order to enforce the FTA,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Taiwan("FTC") was established on January 27, 1992 which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xecutive Yuan (the Cabi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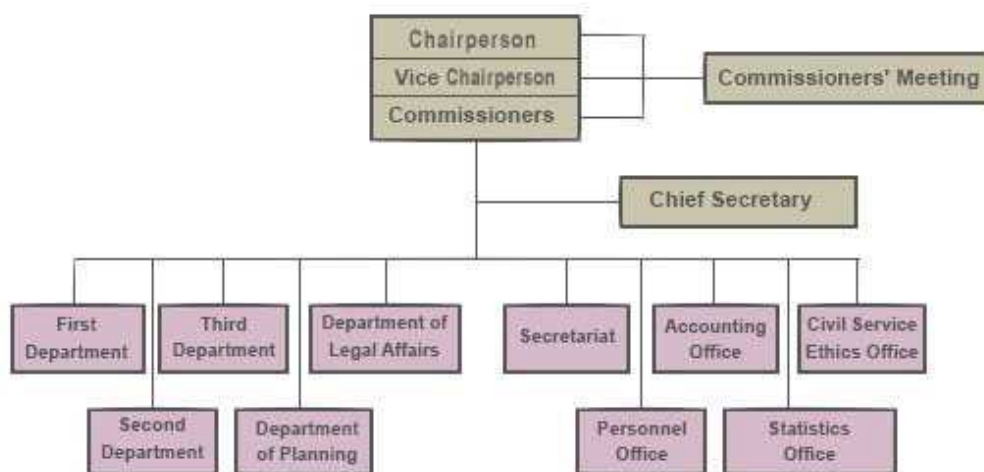
2. Structure and Authority of FTC

a. Structure of FTC

The FTC consists of nine full-time Commissioners, including a Chairperson and a Vice-Chairperson. The FTC issues its decision independently. Each Commissioner is nominated by the Premier and appointed by the President to a three-year office.

Staff assisting the FTC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organizational structure: (i) the Department of Services and Agricultural Sector, (ii) the Department of Manufacturing Sector, (iii) the Department for Unfair Competition, (iv) the Department of Planning, (v) the Department of Legal Affairs, and (vi) other administrative supporting offices.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FTC



b. Authority of FTC

The FTC is the central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competition policy and the FTA in Taiwan. It is charged with drafting fair trade policy, laws, regulations, and investigating and handling various activities impeding competition, such as monopolies, mergers, concerted actions, and other restraints on competition or unfair trade practices on the part of enterprises.

As for any matters provided for in the FTA that concern other ministries and commissions, the FTC may consult with such ministries and commissions to deal with them. The FTC shall have the responsibility to direct and supervise competent metropolitan and county (city) authorities in administering their matters arising under the FTA.

The duties of the FTC, as provided for under the FTA, include the following:

- (1) preparation and formulation of fair trade policy, laws and regulations;
- (2) review of any fair trade matters related to the FTA;

- (3) investigation of activities of enterprises and economic conditions;
- (4) investigation and disposition of any case violating the FTA; and
- (5) any other matters related to fair trade(Art. 25).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FTA, "The FTC may investigate and handle, upon complaints or ex officio, any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FTA that harms the public interest". Article 28 of the FTA provides that "The FTC shall carry out its duties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may dispose of the cases in respect of fair trade in the name of the FTC."

3. FTC's Enforcement Procedure

a.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1) General Statutory Grounds

Under the FTA, the FTC regulates monopolies, mergers and concerted actions. The FTA in general permits the existence of monopolies, as long as they do not abuse their market power. Mergers involving parties reaching a certain sales volume or market shares must apply to the Commission for approval. The FTA in principle forbids concerted actions but allows for exceptions which require the Commission's prior approval.

The FTC regulates unfair competition which includes resale price maintenance, various other types of vertical restraints which are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passing-offs and counterfeiting; false and deceptive advertising; commercial disparagement; multi-level sales and any other practices which are deceptive or grossly unfair.

b. Disposition Taken by FTC

(1) Power of Investigation

In conducting investigations, the FTC proceed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s:

- 1) to notify the parties and any related third party to appear to make statements;
- 2) to notify relevant agencies, organizations, enterprises, or individuals to submit books and records, documents, and any other necessary materials or exhibits, and
- 3) to dispatch personnel for any necessary on-site inspection of the office, place of business, or other locations of the relevant organization or enterprises.

If a person subject to FTC's investigation refuses the investigation without justification, or refuse to appear to respond or to render relevant materials, the FTC may impose certain amount of administrative penalty upon the person(Art. 43).

For breaches of the FTA, the FTC exercises the power for remedies such as cease and desist order. The FTC is also empowered to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of up to \$50 million New Taiwan Dollars (NT) per offence and the court can issue criminal penalties of up to \$100 million NT per offence. Criminal behavior will be referred to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f the violators fail to comply with the FTC's order. Criminal sanctions may take the form of either imprisonment or fines or both. Illegal mergers will be ordered to divestiture their businesses, sell out the share or even terminate the operations.

The FTC shall carry out its duties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may dispose of the cases in respect of fair trade in its name(Art. 28).

(2) Issuance of Disposition

If an enterprise which violated certain provisions of the FTA and was ordered by the FTC to cease therefrom, rectify its conduct, or tak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fails to comply with such order, the actor is punished by imprisonment or a fine or by both(Arts. 35&36).

If an enterprise commits an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the FTC may order the enterprise to cease therefrom, rectify its conduct, or tak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within the time prescribed in the order(Art. 36).

The actor for which enterprise violates Article 22 of the FTA, is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detention, or by a fine of not more than fifty million New Taiwan Dollars, or by both if a complaint is filed(ART. 37).

If a juristic person is convicted of the violation of the FTA, both actor and the juristic person are punished.

(3) Order of Dissolution, Etc.

In case of violation of regulations on multi-level sales, the FTC may, in addition to the disposition under the FTA, order for dissolu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business operation if the violation is serious(Art. 42).

c. Approval of Activities

(1) Approval of Merger

Merger control rules will have effects on the scale of the firms operating in the market and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The FTA requires merging firms reaching certain sales volume, or market shares before or

after a proposed merger, to seek prior approval of the FTC. The threshold for merger notification requirement was set at \$5 billion NT in sales volume, or 1/4 of the market share for a party to a proposed merger or 1/3 of the market share after the merger.

The FTC has broad discretion in making the judgment of whether a proposed merger should be given approval. If the proposed merger, in the judgment of the FTC, will bring benefits to the economy as a whole, and the benefits exceed the costs associated with the lessening of competition caused by the merger, the FTC is authorized by law to grant approval(Art. 12).

Where any enterprise(s) fail to file an application for any merger that is required for approval, or proceed with the merger despite that the application is not approved, the FTC may prohibit such merger, prescribe a period for such enterprise(s) to split, to dispose of all or a part of the shares, to transfer a part of the operations, or to remove certain persons from positions, or make any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For enterprise(s) violating the disposition made by the FTC, the FTC may order the dissolution of such enterprise(s), or the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their operations(Art. 13).

(2) Approval of Vertical Restraint Activities

The FTC grants approval franchise arrangements after reviewing having similar effects as that of acquisition. Through the approval process, the FTC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market position of each chain to prevent the dominance of a particular chain. The FTC also reviews the franchise agreement to ensure that there is no undue restriction on the franchisees, such as exclusive dealing arrangements.

One of the most notable changes in Taiwan's market is the emergence of large chain stores and hypermarkets. Like their counterparts in the western countries a few decades ago, the locally owned retailers are facing tremendous competitive pressures from large-scale operators. Franchise operation soon becomes a way to adapt to the global challenge.

The FTC have been closely monitoring the chain stores and hypermarkets' practice of collecting surcharges from the suppliers for obtaining the "right to display" or the "right to be put on the shelf" for their merchandise. This action is particularly meaningful when the suppliers are smaller firms vis-a-vis their large distributors. The FTC has issued an administrative guideline to promote information transparency of the franchise operation and of maintaining trading order within the franchise industry.

(3) Regulation of IPR Licenses

The large number of SMEs engaging in the manufacturing for export of products, who require technological inputs from large corporations or even multinationals, presents another set of competition issues. Licensing of technology has been an area of much controversy. On several occasions, the FTC found it necessary to intervene in the licensing process, when the licensees are apparently much less experienced and small in size and therefore lack the necessary bargaining power to reach a fair deal. This is particularly so, when the technology's application is so wide that the number of firms seeking licenses is substantial, and the licensor is the monopoly or an oligopoly in the relevant technology market.

The foreign licensors have been required by the FTC on occasions to

specify to their potential licensees in detail the patents associated with the technology involved; to provide explanation of its technology and licensing terms in the local language; to form a good faith belief before alleging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and to refrain from using legal action that may have harmful effects and as a threat in the negotiation process. In a particular case, the FTC ordered three foreign licensors not to jointly negotiate with licensees and to re-enter the licenses considering the material change of international trading environment.

d. Enforcement against Horizontal Collaboration

The FTA adopts a rather strict a *per se* rule in regulating horizontal collaboration. This approach is later found to be rather harsh, considering the prevale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in the local market. In particular, the rather interventionist policy of the government at the earlier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from time to time required collective actions by the business operators who are mostly SMEs, with trade associations acting as government instrumentality in organizing such collective actions.

The FTC, in an attempt to temper the effect of the *per se* rule, introduces a *de minimis* standard in the application of the FTA in this area, so that concerted actions of negligible economic effects would not be pursued.

In addition, the FTA provides a number of avenues for the FTC to grant exception to the general rule against horizontal collaboration. Specifically, collective efforts by SMEs for purposes of improving their efficiency or increasing competitiveness is permissible.

e. Intervention to Regulatory Reform and Liberalization

In Taiwan, government statutory monopolies had been important

instru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a growth-oriented economic policy in the 1960s and 1970s, especially in those areas where the private sector did not have the ability to engage in or where they were considered too risk-averse to invest in.

Since its establishment, the FTC has been monitoring government statutory monopolies closely on their pricing and other business practices, especially those that are of discriminatory nature. It also constantly reviews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s, in conjunction with Taiwan's continuous liberalization move.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the FTC had organized various task forces to review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initiate regulatory reform projects and to coordinate with responsible agencies to implement the liberalization process.

The FTC has been continuously advising the regulatory body during the form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Act; the Petroleum Industry Act; and the Power Industry Act relating to misuse of dominant position, cross-subsidization and undue pricing of the incumbent. In early 1997,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s been opened to competition in order to liberalize the long monopolized market by a single supplier. The mobile phone, paging, trunking radio and mobile data communications are in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have proved to be a success. The private operations in the fixed communications networks is now operating. In 2000, the dominant enterprise in the petroleum market had for first time met competitor. As a result, the consumers now benefited by way of lower retailing price and better services.

f. Promotion of Self-regulation by Industry

To better acquaint enterprises with their own rights and interests and to support government restructuring and encourage industrial autonomy, the

FTC will be actively encourage enterprises to establish mechanisms for self-regulation to steer clear of possible offenses and fines. Large enterprises can regulate themselves with the assistance of their own legal resourc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an draw up industry self-regulation guidelines through trade associations for industry-wide observance.

4.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Penalties

Where an enterprise proceeds with a merger in violation of the FTA, or proceeds with a merger despite that the FTC decides upon the filing to prohibit such merger, or fails to perform the undertakings as required, in addition to the disposition under the FTA, FTC may impose certain amount of administrative penalty upon such enterprise(Art. 40).

The FTC may order an enterprise which fails to comply its order, it may impose upon such enterprise certain administrative penalty(Art. 41).

If a person upon which an administrative penalty is imposed refuses to pay such penalty, the matter shall be referred to the court for compulsory execution(Art. 44).

5. Appeal against Disposition of FTC

If a person does not agree with the disposition of the FTC, the person may appeal to the Executive Yuan(the Cabinet) through the FTC. The person who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Executive Yuan, he may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Court which is a part of Judiciary Yuan.

6. Enforcement in Courts

(1) Criminal Punishment

If an enterprise which violated certain provisions of the FTA and was ordered by the FTC to cease therefrom, rectify its conduct, or take necessary corrective action fails to comply with such order, the actor is punished by imprisonment or a fine or by both(Arts. 35&36).

(2) Private Enforcement

If any enterprise violates the FTA and thereby infringes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nother, the injured may demand the removal of such infringement; if there is a likelihood of infringement, prevention may also be claimed(Art. 30). Also, the injured may demand the enterprise that violates the FTA and thereby infringes upon the rights and interests to compensate the damage arising therefrom(Art. 31).

In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person being injured, a court ma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ture of the infringement, award damages more than actual damages if the violation is intentional; provided that no award shall exceed three times of the amount of damages that is proven. Where the infringing person gains from its act of infringement, the injured may request to assess the damages exclusively based on the monetary gain to such infringing person(Art. 32).

The claim for damages must be placed within two years after the claimant knows the act and the person liable for the damages and within ten years from the time of infringing conduct(Art. 33). In filing a suit with a court, the injured may request the content of the judgment to be published in a newspaper at the expenses of the infringing party(Art. 34).

7. Enforcement Records

As to merger control, whilst the FTC has opposed very few mergers, due to the strong import competition, however, it did reject some applications

from cable TV companies and gas stations, on the grounds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their relevant markets.

IV.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Indonesia¹⁹⁾

1. Introduction

In Indonesia, competition laws and policies are governed by law No.5 of 1999 dated 5 Mar. 1999 concerning Prohibition against Monopolistic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Competition ("Law") The Law has come into force as of september, 2000.

The Business Competition Supervisory the BCSC (Komisi Pengawas Persainga Usaha) ("BCSC"): is formed as independent agency free from management and control of Government or other party and responsible to President for supervision of implementation of the Law.

2. Structure and Authority of the BCSC

a. Structure of the BCSC

The BCSC consists of chairman concurrently as member, vice chairman concurrently as member and at least seven members (Art. 31[1]). Members of the BCSC are appointed and terminated by President with consent of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DPR). (Art. 31[2]). Term of members of the BCSC is five years and may be renewed for one additional term (Art. 31[3]). If as result of end of term vacancy arises in membership of the BCSC, term of member may be extended until new member is appointed (Art. 31[4]).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of the BCSC include;

1. State citizen of Republic of Indonesia of at least 30 years of age and at most 60 years of age at time of appointment;

19) This portion of the Report is based on Sriro's Desk Reference of Indonesian Law, 2007, Equinox Publishing written by Andrew I. Sriro and rearranged. in accordance with th format of this Report.

2. committed to Pancasila and Constitution of 1945;
3. belief in Almighty G-D;
4. honest, fair and of good behavior;
5. domiciled in territory of State of Republic of Indonesia;
6. experienced in business sector or having knowledge and expertise in field of law and/or economics;
7. never convicted of crime;
8. never declared bankrupt by court; and
9. not affiliated with business entity (Art. 32).

The membership of the BCSC terminates due to:

1. death
2. resignation at own request;
3. domicile outside territory of State of Republic of Indonesia;
4. continuous mental or physical illness;
5. end of term of membership of the BCSC; or
6. having been terminated (Art. 33).

Framework of the BCSC organizational structure, duties and functions are stipulated by Presidential decree (Art. 34[1]). For facilitation of conduct of duties the BCSC may be assisted by secretariat. (Art. 34[2]). The BCSC may form working groups (Art. 34[3]). Provisions concerning organizational structures, duties and functions of secretariat and working groups is regulated by decrees of the BCSC (Art. 34[4]).

b. Authority of the BCSC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BCSC are:

- (i) conduct evaluation of agreements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ii) conduct evaluation of business activities and/or actions of business actors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iii) conduct evaluations in relations to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improper use of dominant position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iv)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authorities of the BCSC;
- (v) provide suggestions and considerations regarding Government policy related to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vi) compile directives and/or publications relating to the Law; and
- (vii) provide periodic reports regarding working results of the BCSC to President and People's House of Representatives (DPR) (Art. 35).

Authorities of the BCSC include:

- (i) receive reports from community and/or from business actors regarding allegations of occurr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ii) conduct examinations into allegations of existence of business activities and/or action of business actors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iii) conduct investigations and/or examinations in relation to cases alleging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which is reported by community or by business actors or which is

- discovered by the BCSC as result of its examinations;
- (iv) summarize results of investigations and/or examinations regarding existence of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 (v) summon business actors who are alleged to have conducted violations of the Law;
 - (vi) summon and cause presence of witnesses, expert witnesses and any persons deemed to have knowledge of violations of the Law;
 - (vii) request assistance of investigator to cause presence of business actor, witness, expert witness or any person deemed to have knowledge of violations relating to the Law where such persons are not willing to comply with summons of the BCSC;
 - (viii) request information from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investigations and/or examinations in connection with business actors who violate the Law;
 - (ix) obtain, examine and/or evaluate letters, documents and other items of evidence used in investigation and/or examination
 - (x) decide and determin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loss of another business actor or community;
 - (xi) inform business actor who has been alleged to have conducted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unfair business competition of decision of the BCSC; and
 - (xii) declare imposition of administration sanctions on business actors who violate the Law (Art. 37).

3. the BCSC's Enforcement Procedure

a. Investigation

(1) Reports

Any person with knowledge that violation of the Law occurred or is reasonably alleged to have occurred may report it to the BCSC in writing with clear information concerning occurrence of violation and identity of reporting party (Art.38[1]) Parties who suffer loss as result of occurrence of violation relating to the Law may submit written reports to the BCSC with complete and clear information concerning occurrence of violation along with loss arising and identity of reporting party (Art. 38[2]). Identity of reporting party must be kept confidential by the BCSC(Art. 38[3]). The BCSC establishes procedures for submission of reports (Art. 38[4]).

(2) Investigation Procedure

On basis of report, the BCSC is obligated to conduct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within no longer than 30 days after receipt of report, the BCSC is obligated to determine need or lack of need to conduct further investigation (Art. 39[1]). However, the BCSC may conduct investigation in relation to business actor without need for report in event there is suspicion that there violation of the Law (Art. 40[1]).

In continuation of investigation, the BCSC is obligated to conduct examination relating to business actor reported (Art. 39[2]).

the BCSC is obligated to guard secrecy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business actor which may be categorized as company secrets (Art. 39[3]).

If deemed necessary by the BCSC, the BCSC may hear information from witnesses, expert witnesses and/or other parties (Art. 39[4]).

In conduct of continuation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BCSC members are

to be provided with official letter of duty (Art. 39[2], [4] and [5]).

Business actors and/or other parties who are investigated are obligated to provide items of evidence required in 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Art. 41[1]).

Business actors may not reject examination, reject provision of information needed in investigation and/or examination or delay/obstruct investigation and/or examination process (Art. 41[2]). Violation of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nvestigation and/or examination process are to be conveyed to investigator for conduct of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in effect (Art. 41[3]).

(3) Evidence

Items of evidence for examination by the BCSC take following forms:

- (i) 1 witness information;
- (ii) expert information;
- (iii) letters and/or documents;
- (iv) clues; and
- (v) business actor information (Art. 42).

b. Decision of BCSC

The BCSC is obligated to complete continuing examination in at most 60 days from conduct of continuing examination (Art.39[1] and 43[1]). If necessary period of time for continuing examination may be extended for at most 30 days. (Id. at Art. 43[2]). The BCSC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violation of Law No. 5 of 1999 occurred or did not occur within at most 30 days calculated from completion of continuing examination (Art. 43[3]).

The BCSC is authorized to issue sanctions in form of administrative actions in relation to business actor who violates Art. 47[1] of the Law.

Administrative actions may take form of:

1. stipulation of cancellation of prohibited agreements;
2. order to business actor to discontinue vertical integration;
3. order to business actor to discontinue activities proven to result in monopolistic practices and/or to cause unfair business competition and/or loss to community;
4. order to business actor to discontinue misuse of dominant position;
5. stipulation of cancellation of decision relating to merger or consolidation of business entity and acquisition of shares;
6. stipulation to pay compensation of loss; and/or
7. imposition of fines of at least Rp 1,000,000,000 and at most Rp 25,000,000,000. (Art. 47[2]).

Decision of the BCSC must be read in hearing open to public and immediately notified to business actor (Id. at Art. 43[4]). Within time of 30 days since business actor receives notice of decision of the BCSC, business actor is required to implement aforementioned decision and deliver report of implementation to the BCSC (Art. 44[1]).

In event business actor fails to implement decision and deliver report of implementation to the BCSC, the BCSC may provide decision to investigator for implementation of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law in effect (Art. 44[1], [2] and [4]). Decision of the BCSC constitutes sufficient preliminary evidence for investigator to conduct

investigation (Art. 44[5]).

c. Execution

If there is no objection, decision of the BCSC obtains final and binding decision of the BCSC may be basis of request for execution order from District Court (Art. 46[1] and [2]).

4. Appeal against Decision of BCSC

a. Objections

Business actor may submit objection to District Court at latest 14 days after receipt of that notice of decision (Art. 44[2]). Business actor is deemed to accept decision of the BCSC if business actor does not submit objection within time limit (Art. 44[2] and [3]).

District Court must examine objection of business actor within 14 days from receipt of objection (Art. 45[1]). District Court must give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commencement of examination of objection (Art. 45[2]).

b. Appeal against Decision of District Court

Party who objects to decision of District Court may submit appeal to Supreme Court within 14 days. (Art. 45[3]). Supreme Court must give decision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petition for appeal (Art. 45[4]).

5. Enforcement in Courts

Violations concerning prohibited agreements concerning oligopolies, market segmentation and carving, boycotts, cartels, trusts, oligopolies, vertical

integrations and agreements with other parties abroad and prohibited activities concerning monopolistic practices, monopolies, market control relating to rejection and/or obstruction of business actor from conducting same business activities in relevant market or hindering consumers or subscribers of business actor competitor from engaging in business relationships with business actor competitor, dominant positions, share ownership mergers, consolidations and acquisitions are punishable with criminal sanctions of at least 25,000,000,000 and at most Rp 100,000,000,000 or criminal imprisonment up to maximum of six months in substitution for monetary penalty (Arts. 4, 9 through 14, 16 through 19, 25, 27, 28 and 48[1] of Law No. 5 of 1999 dated 5 Mar. 1999 concerning Prohibition against Monopolistic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Competition).

Violations concerning prohibited agreements concerning price fixing, control over re-sale pricing and supply and tying agreements and prohibited activities concerning market control relating to supplying goods and/or services in manner of selling at loss or setting prices with intention of eliminating or destroying business of competitor or committing deceit in setting costs of production and other costs which may become part of price of component goods and/or services, conspiracies with other parties to:

1. regulate and/or determine winner of tender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unfair business competition;
2. obtain information on business activities of competitors which are classified as company secrets which may result in occurrence of

unfair business competition;

3. impede production and/or marketing of goods and/or services of business actor competitor with intent that goods and/or services to be offered or supplied to relevant market are reduced whether in amount, quality and/or impede of business competitor in meeting product and/or service delivery time requirements; or
4. hold dual positions are punishable with criminal sanctions of at least Rp 5,000,000,000 and at most Rp 25,000,000,000 or criminal imprisonment up to maximum of five months in substitution for monetary penalty (Id at Arts. 5 through 8, 15, 20 through 24, 26 and 48[2])

Violations concerning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nvestigation and/or examination process are punishable with criminal sanctions of at least Rp 1,000,000,000 and at most Rp 5,000,000,000 or criminal imprisonment up to maximum of three months in substitution for monetary penalty (Arts 41 and 48[3]).

Additional criminal sanctions may include:

1. cancellation of business license;
2. prohibition to business actor who has already been proven to have conducted violation of Law No. 5 of 1999 for taking positions of director or the BCSCer for at least two years and at most five years; or
3. termination of specific activities or actions which give rise to loss to other parties (Art. 49)

VI.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Korea

1. Introduction

In Korea, the Korean version of the competition law called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as first enacted by Law No. 3320 on December 31, 1980 when per capita income was a mere US \$1,600.

The purpose of the MRFTA is to encourage fair and free economic competition by prohibi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and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nd by regulating improper concerted acts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thereby stimulating creative business activities, protecting consumers, and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Considering the size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stage of development, it was quite bold. The MRFTA was adopted as an effective means of dealing with Economy's deficiencies and moving toward a market economic system in Korea.

In order to administer and enforce the MRFTA,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KFTC")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Prime Minister but has acted independently. The MRFTA has been evolved for last 27 years.

2. Structure and Authority of FTC

a. Structure of FTC

The FTC is composed of nine (9) commissioners, including a chairman, a vice-chairman, and four (4) commissioners who non-standing members. The commissioners of the KFTCommission are appointed from among those persons who meet any of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The President

shall appoint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 other commissioner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man:

(i) A public official of grade 2 or higher with experience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ii) A person having qualification as Judge, prosecutor, or attorney with a minimum of fifteen (15) years experience;

(iii) professor, or the equivalent at certified research institutes, with a minimum of fifteen (15) years experience who majored in law, economics, or business administration at their respective universities;

(iv) Business manager or individual engaged in consumer protection activities with a minimum of fifteen (15) years experience.

The 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s shall be three (3) years and may be renewed only once.

b. Authority of FTC

The Functions and duties of the KFTC are on the following matters:

(i) Matters relating to regulating the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s;

(ii) Matters regarding restriction of Business Combinations and prevention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ii) Matters relating to regulating improper concerted acts and anti-competitive behavior on the part of trade associations;

(iv) Matters relating to regulating unfair business practices and resale price maintenance;

(v) Matters relating to preventing the conclusion of Unfair International Agreements;

(vi) Matters relating to policies to promote competition through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respect to statute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suppress competition;

(vii) Matters provided by other statutes and regulations to be handled by the KFTC.

For the last 27 years, the KFTC has not confined its missions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only.

Competition policies include endeavors to ease anti-competitive regulations, efforts for structural reform in the public sector like privatization and all activities to promote competition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Through prior consultation system, the KFTC has conferred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prior to enactment or revision of any potentially anti-competitive 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the KFTC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haping and enforcing consumer policies.

The KFTC has taken initiative to correct unfair contract terms and distributed the so-called "Standardized Contract Terms" to protect consumers from damage caused by unfair contract terms.

The KFTC has tried to prevent consumer damage in newly emerging transaction areas such as installment transactions, door-to-door sales and

electronic commerce, etc.

3. KFTC's Enforcement Procedure

a. Statutory Grounds for Enforcement

Any acts to monopolize the market are prohibited. The monopolistic or oligopolistic market under the control of only a few entrepreneurs makes it difficult for competition to function effectively. The Antimonopoly Act applies various regulations to acts intended to monopolize the market and maintain oligopolistic situations by undue means.

-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 Measures against monopolistic situations

Any entrepreneurs are prohibited from restraining competition in conjunction with other entrepreneurs. There are many cases where several entrepreneurs execute agreements for product prices and volumes in order to protect mutual interests, thus voluntarily restraining market competition. The Antimonopoly Act prohibits any artificial competition-restricting acts such as cartels and bid riggings.

- Prohibition of cartels
- Prohibition of bid riggings
- Prohibition of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artels
- Restraint of activities by trade associations

Any acts likely to impede fair competition in a market are prohibited. In order to revitalize the market, it is necessary for entrepreneurs to engage in fair competition in an effort to offer products, which are better in quality and lower in prices than those of their competitors. For this purpose, the Antimonopoly Act designates the acts restraining free

competition and undermining the foundation for competition as "unfair trade practices," and prohibits such acts. "Unfair trade practices" consist of "general designation" applicable to the entire category of business and "Special designation" applicable only to specific category of business.

- Refusal to deal
- Discriminatory pricing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 Unfair low price sales
- Deceptive customer inducement
- Unjust high price purchasing
- Tie-in sales

The following acts are prohibited.

- (i) Abuse of dominant bargaining position
- (ii) Resale price restriction
- (iii) Dealing on exclusive terms
- (iv) Dealing on restrictive terms
- (v) Interference with competitor' transactions
- (vi) Interference with internal operations of competitors

b. Power of Investigation

The KFTC may make the following measures:

- (i) Ordering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witnesses to appear to be interrogated, or collecting their opinions or reports;
- (ii) Ordering expert witnesses to appear to give expert opinions;
- (iii) Ordering persons holding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o submit such materials, or keeping such submitted materials at the KFTC; and

(iv) Entering any business office of the persons concerned with a case or other necessary sites, and inspecting conditions of business operation and property, books and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The KFTC may order its investigators to make these measures. The K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order relevant persons or organizations to appear before the KFTC, or require them to submit necessary reports, information or materials.

The K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commission relevant persons, with the relevant knowledge and experience, or others to carry out necessary research and surveys. The KFTC may, if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hold public hearings to obtain the opinions of the public.

c. Issuance of Correction Order

If there exists any act of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or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e KFTC may order the relevant entrepreneur to correct from the acts, or to take any other measures necessary to correct such acts in violation.

The correction order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correction order shall indicate the measures necessary to correct the violation and the facts found by the KFTC and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ereto.

The KFTC, where it intends to issue a correction order, gives in advance to a person who is to be the addressee of the said correction order an opportunity to express his or her opinions and to submit evidences.

4. Order of Administrative Penalty

If an any entrepreneur effects an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or enters into an international agreement of unreasonable restraint of trade, the KFTC may order the entrepreneur, to pay a surcharge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sales amount of the relevant goods or services.

The order of administrative penalty must be rendered in writing, and the written order for surcharge shall state the amount of the surcharge to be paid, the basis of calculation of such amount, the violation pertaining to such surcharge, and the deadline for payment.

5. Appeals against KFTC's Order

a. Appeals before KFTC

Any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the correction order or the order of administrative penalty the KFTC, may request the KFTC to initiate a hearing regarding the said order.

The KFTC may suspend the execution of all or part a correction order or a order of administrative penalty, when it finds that such action is necessary in the case where a hearing is request pertaining to the correction order. If the KFTC deems the suspension of the said execution to be likely to be likely make it difficult to ensure competition in the market or otherwise deems it necessary, rescind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b. Appeals to the Court

A person who is not satisfied the decision of the KFTC may file a lawsuit to rescind the deci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decision became effective. The court may rescind the decision of the KFTC if the decision is illegal.

6. Enforcement in the Courts

a. Criminal Sanction

Any person who has abused his market dominant position, violated merger restriction, or restriction to unfair trade practices, etc. may be punished by imprisonment and or by a fine.

b. Civil Remedies

A person who suffered damage due to the entrepreneur or trade association that has committed an act in viol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MRFTA may file a lawsuit for damages. The suit for injunction by a private person is not introduced in Korea yet.

VI. Conclusions

We have reviewed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Asian countries of Japan, Singapore, Taiwan, Indonesia and Korea as above. The competition laws are similar each other since all of them traces back to the American antitrust law. However,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among the competition laws of those countrie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basic legal system, historical background in introducing competition law and practical needs for the competition law of each country.

The Japan is the first country which enacted Competition Law in Asia where the Antimonopoly Act of Japan was enacted as early as in July, 1947. In accordance with gradual improvement of the Antimonopoly Act, the authority of the JFTC has been strengthened. Japan has introduced civil remedy not only damages claims but also injunctive reliefs. However, criminal punishment is not available unless the JFTC exercises the exclusive right of accusation. This is significant short coming of Japanese competition law. Japan is advised to improve its system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its institution and practical operation in consideration of its economic power and market share in world trade.

In Singapore, competition law system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by enactment of Competition Act as late as January 1, 2005. This is supposed due to its nature of city state and growth oriented economic policy. However, Singapore is now equipped with comprehensive system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The CCS may give directions of interim measures before issuing an exclusion order or administrative penalty order. Without accusation of the CCS,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remedy can be given. But, such rights of private action can only arise after the CCS has made a decision of violation in respect thereof. It

means in Singapore legal remedies for competition law violation are still largely depend upon administrative measures.

In Taiwan, the Fair Trade Act("FTA") was enacted in February 1991 and came into force as of February 1992. Its enactment of the FTA was 10 years earlier than that of Indonesia or of Singapore. Taiwan introduced a comprehensive competition law system by referring foreign competition law systems. The FTC may exercise various authorities for enforcement of its competition law and may impose a surcharge on violator. If a person does not agree with the disposition of the FTC, the person may appeal to the Executive Yuan through the FTC. The person who is not 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Executive Yuan may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Court which is a part of Judiciary Yuan. Also, criminal punishment and civil remedies are available in Taiwan. It is noteworthy that Taiwan introduced treble damages in order to foster private enforcement of its competition law.

In Indonesia, the competition legislation was first made in 2000. Although its introduction to the Indonesian legal regime has been late in comparis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the system of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under the Law concerning Prohibition against Monopoly Practices and Unfair Business Competition (the "Law") is well defined and precis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erman antitrust law.

The following points are, however, the short comings of the Indonesian competition law for its enforcement:

- (i) The order of the BCSC is not self executive but must be sanctioned by the District Court which may be time consuming and cause substantial impediment to effectiv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 (ii) The statutory duration periods for objection or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BCSC, for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the District Court, or for decision/judgment by the BCSC, District Court or the Supreme Court are too short; and

(iii) No civil remedies, regardless of claims of damages or injunction are available although severe criminal sanctions can be imposed on the violators of the Law.

The above shortcomings may well be improved for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Law and remedies to the victims by the violators of the Law.

Korean competition law has been introduced as early as in 1980 which is the earliest among the above Asian countries except Japan which enacted its competition law involuntarily under the McArthur government in 1947.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is empowered with strong authority and its order can be immediately executed without any aid of the judiciary.

Also the system of the appeal against the order of the KFTC is well equipped by the consecutive procedures such as objection to the KFTC's order, appeal to the Seoul High Court and then appeal to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enterprises which receive orders from the KFTC not infrequently file object or appeal against the KFTC's order these days.

The civil remedies under the Korean MRFTA are, however, not well developed in view of the broad civil remedies available in the Asian countries. In Korea, the damages lawsuit which is not dependent to the correction order of the KFTC has been only introduced very recently and the remedy of injunction by courts are not introduced yet. In consideration of the high level of economy of Korea, the ROK is advised to amend its competition law so as to allow civil remedy of injunction in the near future.

After review of the enforcement systems of the competition law of the above Asian countries, it does not seem that securing harmonization and uniformity of the competition law enforcement systems thereof is too difficult to achieve. However, in order to expedite the harmonization and uniformity thereof, we are of the opinion that more systematic and strategic approach is required as follows:

(i) Scrutinize the common elements and differences in the enforcement system of the above Asian Countries;

- (ii) As a first step, produce a uniform principles which are common to the enforcement system of the above countries;
- (iii) As a second step, formulate a working product to harmonize and coordinate the differences of the enforcement system of the countries;
- (iv) As a third step, find a solution how to harmonize the differences of the enforcement system which are hardly reconcileable among the counties;
- (v) As a final step, not only securing harmonization and uniformity in legal system but also securing those in practical operation thereof should be formulated.

In closing, we wish to advise that harmonization and uniformity of the Chinese competition law, which has come to force as of 2007, with those of the above Asian countries should be deliberated in consideration of China's rapid growth of its economy and influence in other Asian countries.

The End.